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2009. 8

세 법 연 구 센 터

목 차

I. 서 론	7
II. 개정교토협약	9
1. 현 황	9
가. 연 혁	9
나. 협약서의 구성	10
2. 개정교토협약의 주요원칙	14
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14
나. 물품신고서·부속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14
다. 승인된 무역상에 대한 특별절차	14
라.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14
마. 위험관리 및 최소 세관통제	15
바. 심사통제 및 합동검사	15
사. 무역업체와 협력	15
3. 개정교토협약 가입시 우리나라의 검토사항	16
가. 일반부속서 불선택조항	16
나.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18
4. 즉시반출 가이드라인	25
가. 연혁 및 구성	25
나. 주요내용	25
다.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28
5. 21세기 세관	30
가. 개관	30

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31
다. 정부에 대한 도전과제	32
라. 21세기 세관: 새로운 역할	33
마. 미래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36
Ⅲ.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37
1. 미 국	37
가. 통관제도	37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39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42
라. 즉시반출제도	53
2. 호 주	54
가. 통관제도	54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62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63
라. 즉시반출제도	72
3. 일 본	73
가. 통관제도	73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74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77
라. 즉시반출제도	85
4. 국제비교	90
Ⅳ. 결 론	92
참고문헌	95

표 목 차

〈표 Ⅱ-1〉 개정교토협약의 구조.....	11
〈표 Ⅱ-2〉 교토협약 조문별 이행 기간.....	13
〈표 Ⅱ-3〉 우리나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불수락 및 유보 현황.....	18
〈표 Ⅱ-4〉 적송품 종류별 통관·즉시반출 조건.....	26
〈표 Ⅱ-5〉 적송품 구분에 관한 즉시반출 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고시 비교.....	29
〈표 Ⅲ-1〉 미국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43
〈표 Ⅲ-2〉 호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64
〈표 Ⅲ-3〉 일본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77
〈표 Ⅲ-4〉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국제비교.....	90

그림 목차

[그림 Ⅲ-1] 호주의 수입통관 프로세스.....	58
[그림 Ⅲ-2] 일본의 국제 우편물의 통관절차.....	87
[그림 Ⅲ-3] 해상화물에 대한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	88
[그림 Ⅲ-4] 통상신고와 간이신고제도의 비교.....	89

I. 서론

-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역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됨
 - 세계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 통관지점이 대폭 증가하고 통관에 대한 신속처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시작함
 - 또한 WTO 제1차 각료회의(1996년 12월 싱가포르) 이후 ‘무역원활화’가 논의되었으며, APEC과 ASEM의 무역원활화 논의에서도 세관절차는 핵심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각국의 상이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규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제거를 위한 다자간 협력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¹⁾ 일명 ‘개정교토협약’이 2006년 2월 발효됨²⁾
 - 기존 교토협약의 개정배경은 부속서 조항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이고 실제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체약국들로 하여금 자국에 유리한 상이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가입국들이 필수적으로 수락해야 할 내용을 일반부속서에 편입시키고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속서로 편입시켜 강제 이행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협약의 구속성을 강화하였음

- 개정교토협약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³⁾
 - 국제무역과 기타 국제적 교류를 저해하는 체약당사국들의 세관절차와 관행의 상이

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2) 개정교토협약은 1999년 6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존 교토협약 가입국 중 40개국 이상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06년 2월 3일에 발효된 것임

3) 1999년 6월 채택된 개정의정서상에 명기된 내용임

점을 제거함

- 세관절차와 관행의 원활화,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요구에 부응함
- 세관통제의 적절한 표준을 보장함
-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기업 및 행정의 방식과 기업의 주요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물품 반출을 지원하고 관세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관제도와 개정교토협약의 유보조항을 조사해 보았음
- 주요국의 선진통관제도의 시사점을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통관제도 도입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 개정교토협약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미국과 호주 및 일본의 통관제도와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II. 개정교토협약

1. 현 황

가. 연 혁

□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세관절차와 관행의 정립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일환으로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확대를 위하여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총회에서 채택되었음⁴⁾

○ 동 협약은 종전의 단편적인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접근들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인해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리었음

□ 그러나 1973년에 교토협약 제정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모든 조항에 대해 가입국의 자유로운 유보를 허용하여 상당수의 체약국에서 핵심 조항을 유보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협약의 목적인 무역원활화를 유도하는 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음

○ 교토협약 제정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세관절차에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WCO는 21세기의 현대화된 효율적인 세관절차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교토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9년 6월 ‘개정교토협약

4) 우리나라는 1983.10. 가입

(Revised Kyoto Convention)’을 마련함

- 개정교토협약은 다른 협약에 비해 협약 내용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기존 협약가입국 중 40개국 가입 후 3개월 경과 후 발효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 40개국의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발효가 지연되었으나, 2005년 11월 3일 인도가 40번째 국가로 개정교토협약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6년 2월에 개정교토협약이 발효됨
- 개정교토협약은 특별부속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가능하고, 일반부속서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 단, 강제성 완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이행완료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기존 협약에서는 모든 규정에 대해 항상 유보가 가능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 제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업무시간외 통관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세관검사 및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위험관리 및 심사통제와 같은 현대적 기법의 채택과 정보기술의 사용 극대화를 도모함

나. 협약서의 구성

- 개정교토협약은 개정의정서, 기존협약, 일반부속서 및 10개의 특별부속서로 구성됨
 -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에 관해 규정함
 - 협약본문(Body of The Convention)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협약의 관리, 협약의 가입·탈퇴, 규정의 수락·유보, 분쟁해결, 협약의 개정에 관한 규정 포함
 - 일반부속서는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일반원칙, 정의,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 및 제세, 담보, 세관통제, 정보기술

- 의 적용, 세관과 제3자와의 관계, 세관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불복신청 등의 10개의 장으로 구성
-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과도기 표준(Transitional Standard)으로 구분되며, 표준은 협약발효 후 3년 이내에, 과도기 표준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특별부속서는 특별한 세관절차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10개의 각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 장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장(chapter)이 있고, 장별로 수락이 가능함
 - 특별부속서의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으로 구성되며 권고관행은 이유를 적시하여 유보할 수 있음
 - 이행지침(Guideline)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협약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협약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대표적 적용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협약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표 II -1〉 개정교토협약의 구조

협약의 구성	구조 및 주요내용	비 고
【개정의정서】	- 개정이유, 발효 및 개정요건 규정 (협약 내용을 부록 1, 2로 규정)	- 9개 조항 - 63개국 가입발효(09.7 ⁵⁾)
부록 1. 【협약본문】	- 용어의 정의, 협약의 범위와 구조, 협약의 권리, 계약당사국 등 규정	- 20개 조항
부록 2. 【일반부속서】	- 통관절차의 일반원칙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정의 제3장.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제4장. 관세 및 제세 제5장. 담보 제6장. 세관통제 제7장. 정보기술의 적용 제8장. 세관과 제3자의 관계 제9장.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제10장. 관세문제에 관한 이의신청	- 가입의무 사항 - 총 121개 조문 (36개월 내 이행해야 하는 107개 표준과 60개월 내 이행해야 하는 14개 과도기적 표준)

5) 가입국 : 대한민국, 알제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폴

〈표 II-1〉의 계속

협약의 구성	구조 및 주요내용	비 고
부록 3. 【특별부속서】	－ 통관절차의 세부사항 규정 - 특별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도착절차, 물품장치) - 특별 B. 수입(내수용, 재수입, 면세) - 특별 C. 수출(완전수출) - 특별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 특별 E. 운송(보세운송, 환적, 연안운송) - 특별 F. 가공(국내/국외가공, 환적) - 특별 G. 일시수입 - 특별 H. 범칙행위(관세사범) - 특별 J. 특별절차(여행자, 우편물, 상업용 운송수단, 선박용품, 구호물품) - 특별 K. 원산지(원산지규정, 증명, 서류의 통제)	－ 선택적 가입사항 － 총 393개 조항, 가입 시 36개월 내 이행 － 우리나라는 10개 부속서 25개 장 중 8개 부속서 14개 장에 가입
【이행지침】	－ 교토협약 해설 지침으로 협약의 구성 부분이 아니며, 구속력은 없음 － 협약 이행의 통일성과 해석의 신축성을 부여 ※ WCO는 향후 협약개정 대신 이행지침의 개정으로 협약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실질적인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음

자료: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 무역』, 2006. 1월호, p.57, 일부수정

□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관절차의 간소화
 - －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
 - － 외국 세관의 봉인 인정
 - －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 허용
- 통관절차의 신속화
 - －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반출 허용
 - － 업무시간외 통관 허용
 - －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세관통제 금지
 - － 구호용 탁송품에 대한 우선적 통관

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우간다, 영국, 미국, 짐바브웨 등 총 63개국

○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

- 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도입
- 여행자 통관시 복수통관제도 도입
- 원산지 결정시 실질변형 기준 채택
- 통관 관련 분쟁 발생시 독립기관에 대한 불복청구권 허용

○ 관세의 감면

- 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 견본 등
- 일정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 등
- 일시수입물품 등

○ 최혜국 대우

-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관절차의 적용

○ 정보기술의 이용

-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
- 전자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

□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협약본문과 일반부속서 전부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며 특별부속서는 장(chapter)별로 가입국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수락사항

○ 일반부속서의 표준(Standards)에 대해 유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부속서의 권고 관행(Recommended Practice)은 유보가 허용됨

○ 개정교토협약 체약국은 매 3년마다 유보조항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세협력이사회(CCC) 사무국에 통지해야 함

〈표 II -2〉 교토협약 조문별 이행 기간

유 형	해당 부속서	성 격
표준(Standards)	일반 및 특별부속서	발효 후 3년 내 시행
과도기 표준(Transitional Standard)	일반부속서	발효 후 5년 내 시행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	특별부속서	선택적 적용, 발효 후 3년 내 시행

2. 개정교토협약의 주요원칙

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 통관관련 정보제공과 불복심판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어 투명성을 도모하고, 세관 또는 독립된 기구와 사법기관에 의한 불복심판의 투명하고 명백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물품신고서·부속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이 최소한의 신고사항을 요구하게 하며, 전자적인 수단으로 세관 신고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세계관세기구는 세관신고사항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관세 데이터 모델(Customs Data Model) 작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신고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함

다. 승인된 무역상에 대한 특별절차

- 법규 준수도가 높은 ‘승인된 무역상’(Authorized Persons)에 대해 특별통관절차(Fast Track)를 허용함
 - 최근 관세무역기구가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역안전과 신속통관 지침」에 의한 ‘승인된 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과 유사한 개념임
 - 이에 따라 승인된 무역상은 물품에 대한 최소정보를 제공하고 반출할 수 있음

라.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 행정·통상·운송을 위한 국제연합 전자정보 교환시스템인 UN/EDIFACT와 같은 국제

화된 표준을 활용하도록 함

-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
- 서류에 의한 통관절차의 대안으로 서류 없는 전자상거래 기법을 활용함

마. 위험관리 및 최소 세관통제

- 모든 수입서류 및 화물에 대한 검사에서 선별된 서류 및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검사 대상의 선별에 있어 정보 또는 첩보 등 자료를 통해 위험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세관은 효율적인 세관통제를 실현하면서 합법적인 화물의 신속통관을 보장함
 - 세관의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세관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하게 함

바. 심사통제 및 합동검사

- 물품 통관 이후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관통제 방법에 있어서 현물검사 대신 서류에 의한 세관통제를 기본으로 함
 -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검사에 있어 다른 정부기관과 합동 검사 또는 국경에서 다른 나라 세관과 같이 근무하는 경우 통합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함

사. 무역업계와 협력

- 무역업계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무역업계에 정보제공을 권장함

3. 개정교토협약 가입시 우리나라의 검토사항

- 다음은 우리나라가 개정교토협약에 가입시 일반부속서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항과 특별부속서에서 유보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일반부속서는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이 선택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음
 - 국내제도가 협약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행지침(Guideline)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거 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부속서 불선택조항

1) 신고세관 선택제

- 신고세관 선택제는 물품의 소재와 관계없이 신고인이 신고세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수입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수입자나 관세사가 직접 도착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이 편리한 다른 세관에 신고데이터를 전산으로 송부하여 통관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 제3장 제20조에서 신고세관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이행지침에는 물품소재지 관할세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이 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통관고시’)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에 의해 원칙적으로 물품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함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신고세관 선택제가 시행되면 보다 빠르고 일관된 화물처리가 가능하며, 특정수입자의 통관관련기록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고, 수입자가 전국적으로 한 명의 관세사, 하나의 세관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내륙지 세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음⁶⁾
- 그러나 화물의 검사와 관련한 세관 간 업무책임의 조정 등이 필요

2) 주기적 신고

- 주기적 신고란 동일인이 물품을 빈번하게 수출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수출입 건에 대해 단일한 물품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 개정교토협약 제3장 제32조
 - 동 조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to the extent possi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행지침에서 선택사항(optional)임을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통관고시와 및 수입통관고시에 의해 선적단위별로 신고하도록 함
 - 주기적 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관에 의한 통관사후조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출입건별로 처리되고 있는 현행 전산화체제(EDI) 및 관련 물적·인적 시스템이 큰 폭으로 개편되어야 함⁷⁾

6) 신유균, 「발전적 관세행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활동과 한국관세행정의 전개방향(상)」, 『관세연구』, 1999. 9, p. 36

7) 신유균, 앞의 글, p. 35

나.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 우리나라는 2003년 2월에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특별부속서 총 25개 장 중에서 14개를 수락

○ 특별부속서 장별로 불수락 여부와 수락한 장에서 유보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II - 3〉 우리나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불수락 및 유보 현황

부속서명(Annex)		장(Chapter)	수락여부(유보조항)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	A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	수락(7,11조)
		A2. 물품의 일시장치	수락(10조)
B	수입	B1. 내수용 통관	수락
		B2. 동일상태 재수입	불수락
		B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수락(7조)
C	수출	C1. 완전수출	수락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D1. 보세창고	수락(7,8,9조)
		D2. 자유지역	수락(9조)
E	운송	E1. 보세운송	불수락
		E2. 환적	수락
		E3. 물품의 연안운송	불수락
F	가공	F1. 국내가공	불수락
		F2. 국외가공	불수락
		F3. 환급	수락(5,6,9조)
		F4. 내수용 물품의 가공	불수락
G	일시수입	G1. 일시수입	수락(9,19,21,22,23조)
H	관세법	H1. 관세법	불수락
J	특별절차	J1. 여행자	불수락
		J2. 우편거래	수락
		J3. 상업용 운송수단	수락
		J4. 선(기)용품	수락
		J5. 구호용 탁송품	수락(6조)
K	원산지	K1. 원산지 규정	불수락
		K2. 원산지 증명서류	불수락
		K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불수락

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⁸⁾

- 권고관행 제7조 : 세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반입신고의 제출을 요구
 - 물품이 대한민국 관세영역으로 반입시 물품이 위치하는 장소의 관할세관에 적하목록신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법 제135조는 모든 경우에 반입지 세관에 입항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권고관행 제11조 : 물품제시를 위해 소요되는 서류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세관관서에 서 물품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한약재 원료, 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 고철, 해체용 선박, 수산물(HS 0302호 내지 0305호, 단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의 경우 수입신고는 특별히 지정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한약재가 부산에 수입될 경우 적하목록신고는 부산세관에 제출되지 만, 수입신고는 인천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2)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⁹⁾

- 권고관행 제7조 : 연구용 시약, 견본, 이사용품, 개인 선물용품 등 다음과 같이 열거된 물품에 대해 국내법령의 요건에 따라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를 허용

- (a)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관 또는 연구소에 탁송되는 경우의 인체추출 치료물질, 혈액형 및 세포유형 시약
- (b)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데만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
- (c)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함께 또는 따로 반입되는 것으로서,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 또는 직업상의 사용을 위한 이사물품으로서 산업용, 상업용 또는 농업용 설비나 장비가 아닌 것
- (d) 고인의 사망시점에 수입국내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고인이 사

8)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부터 물품이 세관절차에 놓일 때까지, 당사자와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모든 작업을 의미함

9) 물품이 특정상황에서 그리고 특정목적에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그 정상적인 관세 품목분류나 정상적인 조세부담과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관세와 제세없이 내수용으로 통관되는 것

사료이 사용하던 신변용품

- (e) 국내법령이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정한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 선물용품으로서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담배제품을 제외한 것
- (f) 공인된 구호 또는 자선기구에 증여된 식료품, 의약품, 의류 및 모포류 등으로서 이들 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통제하에 빈민에게 무료로 분배될 물품
- (g) 수입국 거주자에게 수여된 상금으로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함
- (h) 군인묘지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용 자재,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수입되는 관, 유골함 및 장례식용 물품
- (ij)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서류, 양식, 간행물, 보고서 및 기타 물품으로서 국내법령이 규정한 것
- (k)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
- (l)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다만, 수입 수량은 시험에 꼭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 물품은 시험과정에서 완전 소진되거나 또는 그 잔존물이 재수출되거나 세관통제하에 상업적인 가치가 제거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개정교토협약 가입시 위 권고관행을 유보했는데, 그 이후 관세법 제93조 면세대상에 국군묘지 관련 장례식용 물품을 포함하는 등 개정교토협약의 내용을 반영

○ 단, 권고관행 7(g) 상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법령에 면세조항이 없음

○ 따라서 나머지 권고관행을 적용하여 면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권고관행 7(a)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 공공의료기관 · 공공직업훈련원 · 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시약(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 권고관행 7(b) :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관세법 제94조 제3호)
- 권고관행 7(c)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관세법 제96조 제2호)
- 권고관행 7(d)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관세법 제93조 제18호)
- 권고관행 7(e)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 하는 물품 중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관세법 제94조 제4호, 동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권고관행 7(f)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91조 제2호)
 - 권고관행 7(h) :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관세법 제93조 제17호)
 - 권고관행 7(ij) :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관세법 제94조 제2호)
 - 권고관행 7(k) :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관세법 제91조 제1호)
 - 권고관행 7(l)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시험지·부분품(학술연구용 등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원재료 및 건품(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및 제5호,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3) 보세창고¹⁰⁾

- ☐ 권고관행 제7조 :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경우 관세 등을 즉시 환급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제9조에 의해 물품이 실제 선적 및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 한하여 관세 등이 환급됨
- ☐ 권고관행 제8조 : 일시반입 중인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경우 일시반입에 따른 재

10) 보세창고 절차라 함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없이 세관통제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수출 의무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 제251조¹¹⁾에 의해 재수출 조건 등으로 일시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며,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고 하여 수출이행 의무가 종료되지 않음

□ 권고관행 제9조 : 내국세 등의 면제 및 환급대상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즉시 내국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도록 함

- 환급특례법 제9조는 보세창고 반입만으로는 내국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실제 선적 및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 한하여 내국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도록 함

4) 자유지역¹²⁾

□ 권고관행 제9조 : 외국에서 곧바로 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이미 확보된 경우, 관세당국은 추가로 물품신고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자유지역 반입물품은 정보이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물품신고 대상임

5) 환급¹³⁾

□ 권고관행 제5조 :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급대상물품의 수출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

-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자재는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자재에 한정하며 동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

11)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12) 반입된 물품이 수입관세 및 제세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관세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국 영토의 일부를 일컬음

13) 물품이 수출될 때 당해 물품 또는 당해 물품에 포함되거나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및 제세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환불(전액 또는 일부)을 규정하는 세관절차임

- 권고관행 제6조 : 상업상 또는 기타 이유(commercial or other reasons)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기간의 연장을 허용
 - 환급특례법 제14조¹⁴⁾에 의하면 환급신청 시한은 수출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액에 보정이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그로부터 2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권고관행 제9조 : 물품이 세관 보세창고에 장치되거나 또는 자유지역에 반입되면, 동 물품이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등을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급특례법 제9조는 물품이 보세창고 반입시에는 관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물품의 선적 및 수출시 환급 가능

6) 일시수입¹⁵⁾

- 권고관행 제9조 : 당해 물품이 추후 재수출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는 경우 물품신고 없이 일시반입을 허용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일시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수입신고가 필요함
- 권고관행 제19조 : 각 경우에 적용가능한 절차와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일시반입물품을 다른 세관절차로 이관함에 따라 일시반입이 중지 또는 종료되도록 함
 - 우리나라는 보세구역 반입 등 다른 세관절차로의 이행만으로 정지 또는 종료되지

14) 제14조 (환급의 신청)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15)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그러한 물품은 특정목적에 위하여 수입되고 그 사용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이 예정된 것이어야 함

않고, 물품이 선적 및 수출되는 경우 일시반입을 종료

□ 권고관행 제21조 : 일시수입 물품에 대한 현금담보를 당초 수입세관이 아닌 다른 수출 세관에서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 관세법 제24조 내지 26조에 의해 담보해제는 당해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장에게 요청해야 함

□ 권고관행 제22조 : 이스탄불 협약(1990년 6월 26일 제정된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물품 중 특정 물품들의 일시수입에 대해 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도록 함

○ 우리나라는 이스탄불 협약에 열거된 물품 중 스포츠 용품, 관광선전용 물품, 동물 및 견본에 대하여 일시수입이 면세로 허용되지 않음

□ 권고관행 제23조 : 권고관행 제22조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과 권고관행 제22조의 물품 중 완전조건부 면제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물품에 대해 관세와 제세가 일부 조건부로 면제되는 일시수입을 허용하도록 함

○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일부조건부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

7) 구호용 탁송품¹⁶⁾

□ 권고관행 제6조 : 모든 구호용 탁송물품에 대해 관세 및 제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세법 제91조¹⁷⁾ 제2호에 의해 HS 8702호 및 HS 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HS 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

16) 차량 및 기타 운송수단, 식료품, 의약품, 의류, 모포, 텐트, 조립식 주택, 정수 및 저수용품 또는 기타 기초필수품 등과 같이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호용으로 충부되는 물품, 그리고 재난 구호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수행기간 동안 그들의 재난지역에서의 생활 및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장비, 차량 및 기타 운송수단, 특별히 훈련된 동물, 보급품, 공급품, 개인 휴대품과 기타물품

17)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즉시반출 가이드라인

가. 연혁 및 구성

□ 세계관세기구는 2003년 3월에 ‘즉시반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을 제정하여 채택

- 다품종 소량화물에 대한 운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절차상 가이드라인을 개발
- 동 가이드라인은 화물도착 전에 운영업자¹⁸⁾가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화물분류의 원칙, 화물반출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리스트, 세관과 무역업계 사이 상호협약 체결과 준수절차를 규정
- 가이드라인은 개정교토협약의 보완적 성격을 가짐
 - － 개정교토협약은 화물통관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즉시반출허용 조건이나 특송물품 통관 관련 필수 데이터 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은 총 16개 조항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즉시반출·통관을 위한 적송품의 분류기준, 즉시반출·통관을 위한 필요 정보 및 서류와 적송품의 검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됨

나. 주요내용

□ 즉시반출·통관을 위한 적송품의 분류는 4개의 범주로 구분

- 범주 1은 서신 및 서류(Correspondence and documents)로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 서신과 서류를 포함
- 범주 2는 세금부과 없는 저가의 적송품(Low value consignments for which no duties and taxes are collected)으로 인쇄물, 명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문헌, 상업적인 분량

18) 모든 적송품을 운송하는 모든 서비스업자를 운영업자(operators)라고 규정(2.1.)

으로 대량공급을 위한 물체, 샘플, 제한가격 이하의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 적송품 자체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가품을 포함

- 범주 3은 세금이 부과되는 저가의 적송품(Low value dutiable consignments)으로 범주 2에 속하는 적송품의 가격과 관세·세금의 한계를 상회하거나 관세·세금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적송품을 포함
- 범주 4는 고가 적송품(High value consignments)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적송품이 이에 해당

□ 즉시반출·통관시 제출서류 및 요구조건은 적송품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음

〈표 II-4〉 적송품 종류별 통관·즉시반출 조건

구분	통관·즉시반출 유형	통관·즉시반출 조건
범주 1	즉시반출	- 세관가격신고서 - 특별히 고안된 가방을 이용한 반출 - 구두, 서면을 통한 통합신고서(적하목록, 운송장, 기타 목록)
범주 2	즉시반출	- 세관가격신고서 - 통합신고서 - 간이화물신고서
범주 3	통관과 동시반출 (Immediate release with simultaneous clearance)	- 적송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위험관리기법에 기초) - 세관의 선택적 서류 심사 - 사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 화물도착 전 간이화물신고서 제출 - 관세 및 세금 납부(후불 가능)

〈표 II-4〉의 계속

구분	통관·즉시반출 유형	통관·즉시반출 조건
범주 3	즉시반출 후 통관 (Immediate release with subsequent clearance)	- 잠정신고서 제출 - 적절한 재정보증 - 서류 및 현품검사(위험관리기법에 기초) - 간이화물신고서 - 통관완료 후 관세 및 제세금 납부완료(후불 가능)
범주 4	즉시반출 후 통관	- 세관에 의해 요구되는 잠정신고서 또는 간이화물신고서 또는 최소 정보를 담고 있는 송장 제공 - 적절한 재정보증 - 허가·인증 등의 요구사항 제공(반출시 또는 통관 전) - 허가·인증 등의 요구사항 제공(제한품목 반출시)

자료: 송선옥, 「WCO의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계간 관세사』, 2004년 봄호

□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의 제한과 세관의 이용가능성

- 범주 1,2,3의 경우 국내 법률과 기타 필요조건을 기초로 각 관세당국은 이 범주 내에 있는 화물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요소의 최소 목록을 특정해야 함
 - 범주 1의 경우 위험평가를 목적으로 세관은 중량 제한을 특정할 수 있음
 - 범주 2의 경우 혼재된 적송품에 있어서 모든 개별 품목을 위한 데이터 요소는 개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거나 개별 품목에 첨부되어야 함
 - 범주 4의 경우 관세법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을 기초로 해야 함
- 운영업자는 적송품의 도착이나 선적을 세관에 사전통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사전통지정보를 통해 세관은 다음 사항이 가능하게 됨
 - 도착 전에 적송품의 범주를 확인하여 적절한 반출·통관절차를 실제 화물 도착 시 적용
 - 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위험의 적송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기법을 적용
 - 서신 및 서류, 제한 또는 금지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무가 또는 저가의 무과세 적송품의 즉시반출을 가능하게 함

□ 적송품의 검사 및 기타사항

- 세관은 필수적으로 모든 적송품을 검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기법을 기초로 검사를 수행해야 함
- 화물이 다른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해 검사되고 세관도 검사할 계획이라면 세관은 가능한 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통관장의 경우 세관·운영업자 공동시설의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업자는 세관으로부터 규정된 시설(대지, 시설, 공급품, 적절한 물리적 안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직원이 반출·통관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거나 필요할 경우 출석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운영업자가 부담
- 운영업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의 수준상 정당화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상업운송을 위해 세관 개청시간 외에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허용할 수 있음
- 세관에 의해 부과되는 어떠한 비용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용의 범위로 제한

다.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물품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특송물품고시에 반영되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신고의 주체와 관련하여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은 모든 범주의 적송품에 대해 운영업자가 신고
 - 반면, 특송물품고시의 경우 목록통관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이신고 특송물품과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화주를 대신해 관세사가 신고
- 제출신고서류와 관련하여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서 고가의 적송품의 경우 일반적인 반출과 통관절차를 적용하되 세관에 의해 요구되는 잠정적 또는 간이화물신고서 또는 최소정보를 담고 있는 송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특별절차를 허용
 - 반면, 특송물품고시에서 고가의 적송품에 대응되는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일반수

- 입물품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특별절차를 허용하지 않음
- 적송품의 구분과 관련하여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은 세금부과 및 가격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특송물품고시는 다음 <표 II-5>와 같이 가격기준을 위주로 구분

<표 II-5> 적송품 구분에 관한 즉시반출 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고시 비교

즉시반출 가이드라인	특송물품고시
<u>서신 및 서류(범주 1)</u>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 서신과 서류	<u>우편물(서신 제외)</u> 관련법령에 특별한 정의규정 없음
<u>세금 부과없는 저가 적송품(범주 2)</u> 인쇄물, 맹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문헌, 상업적인 분량으로 대량공급을 위한 물체, 샘플, 제한가격 이하의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 적송품 자체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가품	<u>목록통관특송물품</u>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u>세금 부과되는 저가 적송품(범주 3)</u> 범주 2에 속하는 적송품의 가격과 관세·세금의 한계를 상회하거나 관세·세금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적송품	<u>간이신고특송물품</u>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 ②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③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④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⑤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⑥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⑦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 물품 ⑧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u>고가 적송품(범주 4)</u> 고가 적송품(High value consignments)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적송품	<u>일반신고특송물품</u>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위의 ①~⑦에 해당하는 물품

자료: 송선욱, 앞의 글, 일부 수정

5. 21세기 세관

가. 개관

□ 21세기의 지난 8년 동안 세관은 무역국제화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됨

- 하나는 효율적인 안전과 국제 공급망의 통제에 대한 수요이며,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무역 원활화 증대에 대한 수요임

□ 전세계 세관당국의 책임자들은 21세기의 세관의 역할을 구성하는 새로운 전략적인 구상과 정책을 개발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도전과제에는 무역의 국제화, 개발과 빈곤 감소, 복잡하고 새로운 감독규정, 국제적인 테러, 환경보호, 다국적 위협의 증가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음
-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국제화된 세관망 구축, 보다 나은 국경관리, 전세계적으로 이익이 되는 대상에 대한 전략적 구조, 공급망과 관리에 대한 세관의 높은 이해, 새로운 기술 사용,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세관 협력관계의 강화와 같이 다양함

□ 이러한 대응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호
- 불법적인 재화의 이동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
- 사업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여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원
- 국가적인 경쟁을 강화
-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

□ 적용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화된 세관행정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막대함

- 합법적인 무역업자들의 순운비용을 감소
- 위험이 높은 재화의 이동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함

- 세관 간에 각국의 프로그램과 통제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도를 증진

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 국제무역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인데, 조기개입 정보, 정보교환기술, 운송방식의 발전, 무역자유화와 같은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 국제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부의 분배에 기여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세계를 조성함
 - 기존에는 지역과 다국가간 무역제도,特惠무역협정, 자국 정부에 대한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였음
- 국제무역 환경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외부 요인에 매우 민감함
 - 국제무역량의 증가와 복잡성 증대
 - －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국제무역은 연평균 8%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였고 복잡한特惠원산지규정이 동반됨
 - 새로운 사업모델과 요구
 - － Just-in-time 분배, 낮은 재고보유, 다양한 운송수단은 국경을 넘어 재화를 이동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가져오고 공급망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킴
 - － 또한 사업체들은 밀수, 과소청구, 원산지 사기, 세번 분류 오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국제무역 관행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
 - 안전 위협과 조직화된 범죄의 증가
 - － 국제무역 공급망은 테러집단의 횡포에 취약한데,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급망 붕괴로 국제무역이 중단될 수 있음
 - － 범죄조직은 유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고 조세포탈과 회피, 국제적인 금융사기, 마약 및 위험물질의 밀수, 자금세탁, 위조품 거래와 같은 위법한 활동에 개입함
 - 국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국경을 넘는 재화의 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수단(예를 들어, WCO SAFE Framework)이 출현함
- 사회로부터의 요구
 - 사회는 국경을 넘는 금지되고 위험한 재화(특히 무기와 마약)의 밀수를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함
 - 사회는 세관이 재화의 일정한 품질과 안전기준 충족을 보장하도록 기대함
 - 또한 사회는 공중보건, 동식물, 환경을 염려함
- 새로운 무역 방식
 - 세계무역의 약 50%가 연결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짐
- 조세포탈의 증가
 - 관세를 포함한 조세 포탈 및 회피가 증가함

다. 정부에 대한 도전과제

- 각 정부가 직면한 주요한 과제는 세계화가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원동력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임
 - 이러한 국제적 과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 정부는 관세연합, 자유무역지역(FTAs), 경제협력협정(EPAs)과 같이 인접국가가 속한 지역에서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음
- 유엔에 의하면 국제화로 인해 지역정부의 역할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국가적, 인접국가들 간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재정의된다고 함
 - 사회경제학적(Socio-economic) 발전의 증대
 - 적절한 사회경제학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
 - 경제성장의 조건 창조
 -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국제무역시스템을 양성

○ 국경 통제

- 안전한 국경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고전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개방화된 세계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정부는 국제무역과 경제통합으로 인해 공동의 해결책이 개발되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새로운 국제적 안보 과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인식함

○ 안전 제공

- ‘안전 제공(Providing security)’의 개념은 ‘국가 경제 안보(National economic security)’란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 군대와 정치에 의한 국가 안보라는 전통적인 개념보다 확대됨

○ 국민 보호

- 오염된 식품, 불안정한 장난감과 소비품, 위험한 의약품, 기타 위조품과 같은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세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임무임

라. 21세기 세관: 새로운 역할

□ 재화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하여 세관의 책임은 재정 목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나아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와 기타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용인된 세관의 공동 임무는 안전과 보안, 무역 원활화, 조세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임

□ 이러한 임무를 지지하게 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제적인 재화와 재화를 소지한 사람의 이동에 대한 확실성, 예측가능성, 안전성을 높임
- 국제 공급망에서 여러 개의 보고 요건과 검사와 같은 이중낭비와 지연을 제거
- 전세계, 인접국가, 국가 내부의 차원에서 사업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여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원

-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제후관계를 구축하여 세관당국 간, 세관과 사업자 간, 세관과 다른 정부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증대
 -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정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세관당국에 역량을 제공
- 국제화와 다른 전략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국제적인 공급망을 통해 국경을 넘는 재화의 이동을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 국제화된 세관망 구축(Globally networked Customs)
 - 다양한 공공 이해관계자와 민간부문 간에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원하는 국제세관망을 구축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제적인 ‘e-Customs’ 네트워크의 창설을 의미함
 - End-to-end 공급망 관리는 보다 심층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보다 쉽게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을 통해 재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운영체제는 기업과 세관 간, 각국의 세관 간에 실시간의 확실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함
 - 국경관리 협조체제 개선(Better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 국경 안전에 투입되는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여행자·재화·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법률요건 간에 조정과 협력을 의미함
 - 보다 나은 국경관리는 세관의 인식과 전자 단일창구(Single Window) 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함
 - 정보활동에 근거한 위험관리(Intelligence-driven risk management)
 - 부족한 자원을 고위험군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
 - 세관이 직면한 과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위험관리지식을 운영단계에 적용하는 최상의 방법과 운영단계 이외에도 위험관리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 세관과 무역업체 간의 협력체제(Customs-Trade partnership)
 - 21세기의 세관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경제주체와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함

- 현대적 업무 방식, 절차 및 기술의 도입과 이행(Implementation of modern working methods, procedures and techniques)
 - 기존의 거래 기반, 문서 기반 통제방식에서 위험수준이 허용된 범위인 경우 시스템 기반 통제방식으로 이동하면서 국경에서 벗어난 감사 기반 통제방식을 포함함
 - 또한 국제협약과 국제관행에 기초하여 기존의 절차를 평가할 필요도 있음
- 신기술 및 도구의 활용(Enabling technology and tools)
 - 세관은 처리, 위험관리, 정보수집, 비침해적인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의 장점을 취해야 함
- 세관 권한 강화(Enabling powers)
 -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관은 집행권한을 강화하는 적절한 법률규정, 사전 정보와 국내·외적인 정보교환에 대한 규정을 필요로 함
 - 이러한 권한은 특히 조직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세관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
- 지식기반의 전문적 서비스 문화(A professional, knowledge –based service culture)
 - 미래 세관의 운영상은 지식과 고객중심적인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함
 -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 행정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고객중심적인 절차와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조직문화도 일관성,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을 증명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해야 함
-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 모든 세관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 걸쳐 운영모델의 능력과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패추방(Integrity)
 - 부패와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마. 미래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 각국의 세관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원책을 필요로 함
 -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며, 국경에서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관이 제공해야 하는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를 강화
 - － 세관이 직면한 도전과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을 공식화함
 - －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역할과 세관의 역할을 인지시킴
 - －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과 수단을 개발하여 유지
 - 통관과 세계관세기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 세관당국의 의견을 대표하고 관련 국제기구(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 유엔, 국제해사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상부와의 기술적인 관계를 수립·유지하여 다른 국제단체와의 관계를 강화
 - 능력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관 능력을 제공
 - － 세관의 국제적인 임무와 국내적인 임무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
 - － 또한 넓고 다양한 국경과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세관행정을 개발
 -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의 사무국을 전환
 - － 세계적인 추세와 발전을 높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연구, 전략적인 능력을 배양
 - － 적절한 감독과 회계를 위해 기존 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구를 도입
 - － 회원국의 정책 실행과 순응도를 모니터링하고 집행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계관세기구의 정책 집행을 촉진
 - － 세계관세기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 방식을 평가

Ⅲ.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1. 미 국

가. 통관제도¹⁹⁾

- 통관물품 도착시 통관항에서 화물인수인이 세관장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의해 그 물품의 인도가 허가되고, 관세를 납부한 뒤에 법적으로 통관이 인정됨
 -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화물인수인, 통관대행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미국 내 제3의 항구로 보세운송할 수 있음

- 제반 통관준비 및 상품하역은 수입업자의 책임

- 통관은 정식통관(Formal Entry)과 약식통관(Informal Entry)로 구분할 수 있음²⁰⁾

- 약식통관은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개인용 선적, 상업용 선적, 우편물에 적용
 - － 대부분의 경우 물품가격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약식통관에 의함
 - － 섬유제품, 일부 신발, 기타 쿼터/비자 제한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음
- 정식통관은 일반적으로 관세담보요건을 갖춘 상업용 선적에 해당
 - － 물품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면 개인용 선적이라도 정식통관을 요구
- 약식통관에 대해 담보제공과 사후정산절차가 생략됨

- 수입신고는 Entry와 Entry Summary로 구분됨

19)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미국 수출입제도(http://www.kita.net/jsp/wiki/WIKI006.R02.cmd?cmd_id=WIKI006,

R02.cmd&country=northAmerica&countryEngName=usa&nationCategory=trade)

20) <http://www.americanimporters.org/pages/marketing/USImportrequirements.html>

- Entry는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것으로, 세관양식 Form 3461 (Immediate Delivery Application)을 사용
- Entry Summary는 세관이 세액결정, 통계자료수집, 타법령과의 합치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세관양식 Form 7501(Consumption Entry), Form 7502 (Warehouse Entry) 등을 사용

□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 (분리제출이 일반적임)

- 분리제출시: Entry 제출로 물품을 반출한 뒤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
- 결합제출시: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Entry와 Entry Summary를 제출한 뒤 이를 검토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검사를 거쳐 반출되는 방식임

□ 통관절차

적하목록(Manifest) 제출 → Entry 제출 → 물품 반출 → 개산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하여 심사 → 최종 관세 정산

- 운송회사는 세관 입항신고시 적하목록을 함께 제출
- 세관은 적하목록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물품이 장치, 보세운송 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Entry 기재내용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
- 물품도착 후 수입자는 근무일기준 5일 이내 수입신고(Entry 제출)
 - 1회 연장가능(10 근무일): 시한 경과시, 세관 지정창고에 입고
- 물품조사 및 반출:
 - Entry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그 상품의 불법성 여부를 고위험(high risk) 혹은 저위험(low risk) 물품으로 선별(고위험 물품은 집중 현물조사)
 - 저위험 물품은 일반검사(서면검사에 그침)
 - 검사 후 세관직원이 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허가
 - Entry Summary의 제출 및 심사
 - 수입자는 반출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개산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상품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산정은 일단은 모두 수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

-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세액확정, 통계작성,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법령 등과 일치여부를 심사
- 수입업자가 개산하여 납부한 관세액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 초과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데 이는 Entry Summa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임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1) 신고세관 선택제

- 미국의 ‘원격지 신고제’(Remote Location Filing)는 승인받은 자에 대해 도착항이나 지정된 검사장소 이외에 미국 내 소재하는 관세청 지부에 전자적으로 입항신고를 허용하는 시범적인 프로그램임
 - 원격지 신고제는 무서류(paperless)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3년 12월부터 시행된 「관세현대화법」에 포함되어 있음
 - 즉,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서류 작성, 심사,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또한 national permit을 가진 관세 브로커가 여러 사무소를 운영할 필요 없이 주요 원격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4월 22일 현재 256개 항구에서 원격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
- 원격지 신고제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으로서 반입 건별(entry-by-entry)로 다음을 모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²¹⁾
 - 수입신고서
 - 요약수입신고서
 - 자동송장프로그램(Electronic Invoice Program)을 이용한 송장정보

21) 19 U.S.C. §1414

○ 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을 통한 제세공과금의 납부

□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는 자동중개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신청자는 원격지 신고제를 신청하기 30일 전에 자동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신청자는 원격지 신고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자동송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원격지 신고제 신청자는 National Permit을 보유해야 함
- 원격지는 자동송장프로그램/원격지 신고제 트레이닝을 받았어야만 함
- 신청자는 담보 충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거나 상회하는 지속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오직 수입유형 01(소비)와 수입유형 11(비공식)만이 원격지 신고제에 적용
- 화물반출은 수입요약거래정보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 원격지 신고제 신청자는 원격지 신고 대상거래에 대해 서면송장이나 line release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없음
- 가능한 한 원격지 신고제 신청자는 ‘자유안보무역 프로그램’(Free and Secure Trade)과 ‘도착전 수속프로그램’(Pre Arrival Processing System)을 이용해야 함
- 가능한 한 원격지 신고제 신청자는 다른 정부기관 시스템(OGA)을 이용해야 함
- 정부 계약 수입(국방계약관리 부문 운영에 따른)은 원격지 신고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기적 신고

□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은 무관세 물품에 대한 ‘월별 통합 신고’(Monthly Consolidated Entry)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²²⁾

22)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remote_location_filing/operational_notes/filing_opt_pipe.xml)

- 월별 통합 신고는 1970년 7월 1일자 관세국 회보에서 발표된 제도로서 반복적으로 대량 수입되는 무관세 물품에 대해 통관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월별 통합 신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발전하였음²³⁾
 - 이 제도는 관세청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신고서류의 수와 통관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며, 최초 화물 통관에 보다 적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에 장점이 있음
 - 일반인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신고서류가 줄어들고 브로커, 선사, 수입자 등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통관신고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던 월별 회계방식에 부합하고 화물통관이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 이 제도에 의하면 적하목록을 매일 제출받아 나중에 월별 요약 신고에 통합하고 이러한 월별 요약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이는 (구)무역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System; ACS), 원격지 신고제, 전자송장프로그램(Electronic Invoice Program)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행하던 것임
 - 따라서 새로운 전자제도를 반영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임시적으로 신청 옵션을 부여하게 됨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은 원격지신고제 및 전자송장프로그램과 월별 통합 신고를 이용하여 수입될 수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은 두 가지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음
 - 매일 원격지신고제 및 전자송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조정을 위해 요약 신고를 생성해야 함(Option A)
 - 월별 통합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지신고제 및 전자송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월별 통합요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Option B)

□ 한편 2004년 7월 이후부터 (신)무역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23)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entry_summary/pipeline_entry/consolidated_entry.xml)

ACE)을 통해 ‘주기적인 월별 보고(Periodic Monthly Statement)’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²⁴⁾

- (신)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매 거래마다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 － (신)무역자동화시스템(ACE)은 자동통관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무역거래시스템으로서 기존의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과 (구)무역자동화시스템(ACS)을 대체할 것임
- 월별 보고를 이용하려는 수입업자는 ACE 포털계정을 설정하거나 비포털(non-portal) 계정을 설정한 경우 이미 ACE 포털계정을 설정한 브로커를 통해 월별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 ACE 포털계정은 관세청, 무역업체 및 관련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상업적 홈페이지임
- 2009년 1월 현재 미 관세청은 주기적 월별 보고를 통해 전체 관세 및 수수료의 40%(10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15,500개 이상의 ACE 계정이 설정되어 있음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²⁵⁾

- 미국은 2005년 12월에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에 가입하였으며, 특별부속서 총 25개 장 중에서 18개를 수락함
 - 특별부속서 장별로 불수락 여부와 수락한 장의 권고관행에 대하여 유보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24)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bp.gov/xp/cgov/newsroom/fact_sheets/trade/ace_factsheets/ace_monthly_sheet.xml)

25) WCO 자료

〈표 Ⅲ-1〉 미국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부속서명(Annex)		장(Chapter)	수락여부(유보조항)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	A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	수락(12조)
		A2. 물품의 일시장치	수락(11조)
B	수입	B1. 내수용 통관	수락
		B2. 동일상태 재수입	수락(15조)
		B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수락(7조)
C	수출	C1. 완전수출	수락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D1. 보세창고	수락(7,8,9조)
		D2. 자유지역	수락(9,18조)
E	운송	E1. 보세운송	수락(7조)
		E2. 환적	수락(6조)
		E3. 물품의 연안운송	수락
F	가공	F1. 국내가공	수락(7,23,25,26조)
		F2. 국외가공	수락(16,17,18조)
		F3. 환급	수락(5,6,9,10조)
		F4. 내수용 물품의 가공	불수락
G	일시수입	G1. 일시수입	수락(16,22,23조)
H	관세법	H1. 관세법	불수락
J	특별절차	J1. 여행자	불수락
		J2. 우편거래	불수락
		J3. 상업용 운송수단	수락
		J4. 선(기)용품	수락(4조)
		J5. 구호용 탁송품	수락
K	원산지	K1. 원산지 규정	불수락
		K2. 원산지 증명서류	불수락
		K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불수락

1) 물품신고 제출전 절차(Chapter A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2조 :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가 이 목적을 위하여 정해지지 않은 언어, 또는 물품이 반입되는 국가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서류에 기재된 상세사항의 번역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함

○ 그러나 미국 관세법 시행규칙은 물품신고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19 CFR

141.86²⁶⁾)

2) 물품의 일시장치(Chapter A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1조 : 일시장치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물품은 그러한 품질 저하, 훼손 또는 손상이 관세당국이 납득할 정도로 정당하게 입증될 경우에, 물품이 당초에 품질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상태로 수입된 것처럼 통관되도록 공제해야 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품질 저하 또는 손상으로 인한 관세 공제(duty allowance)를 인정하지만, 일부 규정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수입 전에 발생한 변색 또는 부식으로 인한 부분적 손상에 대한 관세 공제는 철(iron), 강철(steel), 철제품 또는 강철제품에 대해 허용되지 않음(19 USC §1202)

○ 미국 관세청은 연방관세법 §1563(a)의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proof)에 따라 손상된 상품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²⁷⁾

– 수입일로부터 3년 이상 보세창고에 머물러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환급이나 경감이 허용되지 않음

3) 동일상태 재수입(Chapter B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5조 : 동일 물품이 수회에 걸쳐 재수입 조건부로 수출되고 동일 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수출시 제출된 재수입 조건부 수출신고가 그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물품의 재수입 및 수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미국은 특별히 예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요구함(19 CFR 141.4²⁸⁾)

26) 19 CFR 141.86 Contents of invo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27) 19 USC §1563 Allowance for loss, abandonment of warehouse goods

28) 19 CFR 141.4 Entry required

4)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Chapter B3)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다음 물품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와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국내법령이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면제가 부여되어야 함

- (a)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관 또는 연구소에 탁송되는 경우의 인체추출 치료물질, 혈액형 및 세포유형 시약
- (b)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데만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
- (c)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함께 또는 따로 반입되는 것으로서,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 또는 직업상의 사용을 위한 이사물품으로서 산업용, 상업용 또는 농업용 설비나 장비가 아닌 것
- (d) 고인의 사망시점에 수입국내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고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던 신변용품
- (e) 국내법령이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정한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 선물용품으로서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담배제품을 제외한 것
- (f) 공인된 구호 또는 자선기구에 증여된 식료품, 의약품, 의류 및 모포류 등으로서 이들 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통제하에 빈민에게 무료로 분배될 물품
- (g) 수입국 거주자에게 수여된 상금으로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함
- (h) 군인묘지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용 자재,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수입되는 관, 유골함 및 장례식용 물품
- (i)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서류, 양식, 간행물, 보고서 및 기타 물품으로서 국내법령이 규정한 것
- (j)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
- (k)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다만, 수입 수량은 시험에 꼭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 물품은 시험과정에서 완전 소진되거나 또는 그 잔존물이 재수출되거나 세관통제하에 상업적인 가치가 제거되어야 함

○ 미국 관세율표에 따라 고인의 신변용품(권고관행 7(d)), 자선기구에 무상제공된 생필품(권고관행 7(f)), 수입국 거주자에게 수여되는 상금(권고관행 7(g))에 대해 면세하는 조항은 없음

○ 따라서 나머지 권고관행을 적용하여 면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권고관행 7(a) : 인체추출(human origin) 치료물질, 혈액형 검사와 조직검사 시약
(Subheading 3001 and 3006, HTSUS)

- 권고관행 7(b) : 물품당 1달러 이하인 샘플(Subheading 9811.00.60, HTSUS)
- 권고관행 7(c) :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반입한 업무상 필요한 서적, 비품, 기계 및 거래나 업무상 필요한 기구(Subheading 9804.00.10)
- 권고관행 7(e) : 재입국(returning resident)이 아닌 자의 100달러를 넘지 않는 물품
- 권고관행 7(h) : 군인모지를 언급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모지를 포함한 종교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Subheading 9810.00.20, HTSUS, Subheading 9810.00.25, HTSUS), 공공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정부, 사회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Subheading 9812.00.40, HTSUS)은 면세
- 권고관행 7(ij) : 종이, 카드, 사진, blueprint, 테이프 기타 수단을 이용한 경영학, 공학 또는 탐사에 관련 기록, 도표 기타 자료(General Note 16, HTSUS)
- 권고관행 7(k) : 종교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Subheading 9810.00.25, HTSUS)
- 권고관행 7(l) : 실험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가공품, 사진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 하여 오직 테스트, 실험 또는 검사 목적의 물품(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함)(Subheading 9813.00.30, HTSUS))

5) 보세창고(Chapter D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수출될 때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추후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환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

○ 미국법상 관세 환급 규정은 수출이나 파괴(destruction)에 대한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수출목적으로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만 하면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19 USC §1313²⁹⁾)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8조 : 일시수입절차하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추후의 수출

29) 19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또는 기타 승인받은 처분을 위하여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 절차에 부수되는 의무는 정지 또는 해제됨

○ 미국에서는 일시반입 절차에 따라 bond charge는 오직 수출이나 파괴 시점에 취소됨(19 CFR 10.31, 10.39³⁰⁾)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 내국제세의 부과대상이거나 동 제세를 이미 부담한 물품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함

○ 미국은 내국세 환급조건으로 수출을 요구(19 USC §1313(d))하며, 보세창고를 규율하는 미국 법령에는 보세창고 반입을 수출로 보는 규정이 없음(19 USC §1555, 1557)

6) 자유지역(Chapter D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 외국에서 곧바로 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에 수반되는 서류를 통하여 이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관세당국은 물품 신고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미국 자유무역지역 규정(19 CFR 146.32³¹⁾)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서식(Customs Form) 214를 신청할 것을 요구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8조 : 자유지역에서 반출 즉시 외국으로 운송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당국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동 물품에 수반된 서류를 통하여 이미 이용 가능한 것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 관세서식 301에 근거한 export bond 신청에 따라 즉시수출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관세서식 7512의 신고를 요구함(19 CFR 146.67³²⁾)

30) 19 CFR 10.39 Cancellation of bond charges

31) 19 CFR 146.32 Application and permit for admission of merchandise

32) 19 CFR 146.67 Transfer of merchandise for exportation

7) 보세운송(Chapter E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관세당국은 모든 세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관련 탁송품의 상업 또는 운송서류를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로 수락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락은 동 서류에 표시되어야 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필수통관자료에서 상업용 서류(commercial document)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19 CFR 18.11³³⁾, 18.13³⁴⁾)

8) 환적(Chapter E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 : 관세당국은 모든 세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관련 탁송품의 상업 또는 운송서류를 환적을 위한 물품신고서로 수락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락은 동 서류에 표시되어야 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필수통관자료에서 상업용 서류(commercial document)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19 CFR 18.11, 18.13)

9) 국내가공(Chapter F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아래의 경우 보상제품 내에 당해 수입물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국내가공의 필요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음

- (a) 물품의 존재가 다음과 같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 당해 보상제품의 투입물과 제조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의 제출을 통해 또는
 - 세관통제에 의한 처리 작업 중에
- (b) 또는 국내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사양이 동일한 물품의 처리를 통하여 획득된 제품의 수출에 의하여 당해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 미국은 자유무역지역(FTZ)과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TIB)에서 권고관

33) 19 CFR 18.11 Entry; classes of goods for which entry is authorized; form used

34) 19 CFR 18.13 Procedure; manifest

행 7(a)을 허용함

- 권고관행 7(b)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오직 석유에만 한정되는 수입대체품에 허용함 (19 USC §81c(d)³⁵⁾)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3조 : 국내법령은 보상제품이 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은 국내가공 허가를 받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해야 함

- 미국은 수출 실패로 정산 후 손실에 대해 추정제세의 2배 금액으로 부과함(19 CFR §10.39³⁶⁾)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5조 : 등가물을 처리하여 얻어진 제품은 이 장의 목적상 보상제품으로 간주됨(등가물에 의한 대체)

- 대체개념이 아닌 회계방법에 의한 일체화(identification)를 제외하고, 미국 법령은 이 권고관행과 충돌함(19 USC §81c(a))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6조 : 등가물에 의한 대체가 허용될 경우에 관세당국은 국내가공을 위한 물품의 수입 이전에 보상제품의 수출을 허가해야 함

- 미국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석유를 제외하고 등가물의 대체를 규정하지 않음 (19 USC §81c(a))

10) 국외가공(Chapter F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국외가공을 위하여 일시수출된 물품이 외국에서 무료로 수리된 경우에 국내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관세 및 제세를 전액 면제받아 재수입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최근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HTSUS 9802.00.40에 따라 특정 국가

35) 19 USC § 81c. Exemption from customs laws of merchandise brought into foreign trade zone

36) 19 CFR 10.39 Cancellation of bond charges

의 보증하에 수출되었다가 수리된 물품과 HTSUS 9802.00.50에 따라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수리되거나 변경된 물품에 제한됨

11) 환급(Chapter F3)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5조 : 물품의 수출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동 기한은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요청하게 되면 연장되어야 함

○ 미국은 완성물품이 수입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수출되지 않는다면 환급을 불허함 (19 USC §1313(i)³⁷⁾)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 : 환급청구가 수락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적 또는 기타 사유로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미국은 ‘관세청이 기한이 지난 신청에 책임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환급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19 USC §1313(r)(1)³⁸⁾)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 물품이 세관 보세창고에 장치되거나 물품이 자유지역에 반입되면 동 물품이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환급액이 지급되어야 함

○ 미국에는 현재 보세창고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0조 : 관세당국은 특정기간 중에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주기적인 환급액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같이 지급하여야 함

○ 미국에서 관세환급은 법률(19 USC §1313)에 따라 실시되며, 현재 주기적 환급규정은 없음

37) 19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38) 19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12) 일시수입(Chapter G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6조 : 관세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일시수입 이익의 이전을 승인하여야 함

○ 미국은 일시수입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음(19 USC §1484)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2조 :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는 일시수입은 1990년 6월 26일 제정된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다음 부속서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허용됨

- (1)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부속서 B.1.)
- (2) 직업용구(부속서 B.2.)
- (3)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입된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용품, 견품 및 기타 물품(부속서 B.3.)
- (4)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목적의 수입품(부속서 B.5.)
- (5) 여행자의 개인 휴대품 및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부속서 B.6.)
- (6) 관광 선전용 물품(부속서 B.7.)
- (7) 국경무역으로 수입된 물품(부속서 B.8.)
- (8) 인도주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부속서 B.9.)
- (9) 운송수단(부속서 C.)
- (10) 동물(부속서 D.)

○ 이 권고관행은 미국이 현재 가입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규정
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예를 들어 미국은 ‘국경무역(frontier traffic)으로서 수입된 물품 부류’(권고관행 22(7))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이 권고관행 22의 일부를 수용하여 관세 부과 없이 임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HTSUS, 연방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규정이 있음

- － 견본 또는 전시용, 박람회 물품(19 CFR 147.2, 19 U.S.C. 1751-1756)
- － 전문장비(Subheading 9813.00.50, HTSUS)
- － 팔레트(19 CFR 10.41a), 일련번호가 기재된 컨테이너(19 CFR 10.41b), 상품 주문 목적의 샘플

- 농업, 미술, 교육, 과학 축진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 또는 단체의 전시용 물품 (Subheading 9812.00.20, HTSUS), 교육, 과학 분야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들이 사용할 물품(Subheading 9810.00.60, HTSUS),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교육, 과학, 문학, 철학 분야와 미술품 축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용목적의 물품(Subheading 9810.00.30, HTSUS)
- 여행자의 운동용 개인기구(Subheading 9813.00.50, HTSUS)
- 관광객 홍보 자료(Subheading 4911.10.00.60, HTSUS)
- 항공기 물품 및 장비, 사고로 인한 항공기 손상과 관련된 연구, 구출, 조사, 수리, 구조에 사용되는 여분의 부품(19 U.S.C. 1322)
- 기관차, 철도 장비, 트럭, 버스, 택시 등 운송수단(19 CFR 10.41)
- 사육, 전시, 경기, 사용 목적의 동물(Subheading 9813.00.60, HTSUS)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3조 : 권고관행 22에 속하지 않은 물품과 권고관행 22의 물품 중 완전조건부 면제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관세 및 제세가 적어도 일부 조건부로 면제되는 일시수입을 허용해야 함
- 권고관행 22와 동일한 유보조항 적용

13) 선(기)용품(Chapter J4)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4조 : 국제고속열차의 조달품으로 수입된 승객과 승무원의 소비용 선(기)용품은 ① 동 물품이 해당 국제열차가 통과하는 국가에서만 구매되고 ② 동 물품이 구매된 국가에서 그 물품에 부과대상인 관세 및 제세가 납부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수입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어야 함
- 미국은 현재 특별히 국제고속열차로 물품을 해외에 공급하지 않음
- 국제열차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해 그러한 물품이 밀폐되거나 적절한 재고 자산 목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함(19 CFR. 123.11³⁹⁾)

39) 19 CFR 123.11 Supplies on international trains

라. 즉시반출제도

- 미국의 통관절차에서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이 소포와 해상화물에 대한 즉시반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음
- 2,0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한 관세는 해당 주소에 배달하는 우편배달원이 징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함
 - 2,000달러를 초과하는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 근처의 관세항에 정식 수입신고를 준비해서 제출할 것을 해당 주소로 고지함
 - 소포에 대해 ‘송장 동봉(Invoice enclosed)’을 표시하거나 송장을 소포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됨
- 해상화물에 대한 즉시반출 절차는 물품 도착 전에 관세청 서식 3461에 따라 즉시반출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만 허용됨⁴⁰⁾

-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운반중인 물품(port director가 이를 승인하고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운반중인 식용 목적의 신선 과일 및 채소로서 국경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채취하여 수입항의 수입자 소유지에 장치하는 경우
- 미국 정부기관에 전달될 물품 또는 미국 정부기관을 위한 물품
- 무역박람회를 위한 물품
- 할당관세 물품과 일정 조건하에 있는 절대적 쿼터 물품(절대적 쿼터 물품은 항상 정식통관을 거쳐야 함)
- 소비 목적으로 창고반입 철회(warehouse withdrawal)에 따라 10일 안에 창고에서 반출된 물품(극히 예외적인 경우임)
- 관세청 본청에서 특별히 즉시반출을 승인한 물품

- ‘화물정보전송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에 가입된 운송업자는 외국 출발 후, 미국 도착 5일 전까지 조건부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게 되면 도착

40) CBP,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Pub.#0000-0504, 2006.5.12

즉시 반출되어야 함

- 요약신고서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반출 후 10일 안에 추정세액이 예치되어야 함

2. 호 주

가. 통관제도

1) 수입통관절차

가) 개관

- 호주의 관세법(CUSTOMS ACT 1901)에서는 수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제68조의 규정(Entry of imported goods)에 의하면 ‘수입된 물품’이란 배,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호주의 영토로 물품이 반입된 것을 의미함
-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서류수속(문서 또는 전자방식)을 밟아야 함⁴¹⁾
 - 수입자(importers) 또는 관세사(licensed brokers)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함
 - 수입 물품 중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기준 AUD1,000⁴²⁾을 초과하는 것은 수입신고서를 하여야 함⁴³⁾

41)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절차 이행 후에라도 수입된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42) CUSTOMS ACT 1901 – SECT 68

43) 그러나 AUD1,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Self Assessed Clearance Declaration(SACD)로 세관에 전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면 됨

- ☐ 모든 물품은 반드시 호주로 반입되기 전에 관세청에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물품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⁴⁴⁾
 - 이 정보는 관세청과 호주검역청(AQIS)⁴⁵⁾의 위험 평가(isk assessment)에 중요한 결정 기준임
 - 물품은 물품기록(cargo report)⁴⁶⁾없이 호주에 반입될 수 없음

- ☐ 수입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⁴⁷⁾
 - 수입자(관세사)의 상세한 기술
 - 물품 가격
 - 물품의 호주 도착 운송방법의 기술
 - 세번 변경기준의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등
 - 호주검역청(AQIS)의 처리 정보, 수입신고 형태, 컨테이너 세부정보 등
 - 물품의 사회보호기능에 필요한 신고(Community Protection Declarations)

나) 수입신고 시스템

(1) ICS(Integrated Cargo System)

- ☐ 지난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기존의 수입통관전산망인 COMPILE(Customs On-line Method of Preparing from Invoices Lodgeable Entries)은 2004년 10월부터 현재의 통합 화물관리시스템인 ICS로 대체되었음

- ☐ COMPILE시스템은 호주의 과거 수입통관전산망으로 온라인 방식에 의한 상업송장 신고서의 세관제출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음⁴⁸⁾

44) IMPORT CARGO REPORTING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45) 호주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은 COMPILE 시스템에 연결되어 검역물품을 처리함

46) CUSTOMS ACT 1901—SECT 64AB

47) LODGING IMPORT DECLARATIONS,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p. 4

48) Customs Guide to Importing and Exporting,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2, p.10

○ COMPILE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자료의 편집과 확인, 잘못된 자료의 온라인 방식에 의한 즉시 수정을 위한 보고
- 외국 화폐표시의 호주 화폐표시로의 변환

□ 현재의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은 IT기술을 활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하여 과거 시스템을 대체하였음

- 동 시스템은 1차로 2004년 10월 6일부터 수출통관절차에 적용되고, 이후 소프트웨어상의 기술적인 문제(웹 속도, 데이터 match상의 문제 등) 발생 등이 있었지만 2005년 10월 12일부터 수입통관절차에 적용되었음
- 수입자(화주)는 반드시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의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어야 함

□ ICS 시스템과 관세청의 연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s)를 구입해야 함⁴⁹⁾

- 디지털 인증서는 암호화된 개인 키(private keys)와 공개 키(public keys)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다음을 포함한 신원증명(evidence of identity)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⁵⁰⁾
 - 주소, 거주지, 서명, 출생월일

(2) EFT(Electronic Fund Transfer) 시스템

□ 관세 자동납부시스템으로 관세 등 제세의 납부를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 수입통관시스템과 연결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 두고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이체하는 방식

49)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5950>, 2009. 7. 13일자 접속

50)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CS_FAQ_DigCert100PtCheck.pdf, 2009. 7.13일자 접속

으로 제세를 납부함

다) 수입신고절차

□ 수입자(화주)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도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즉시 반출하는 물품은 보통 화물 도착 전에 이루어짐) 화물에 관한 전산망⁵¹⁾인 선박화물전산망(SCA) 및 항공화물전산망(ACA)을 통하여 선하증권(master bill of lading 및 house bill of lading과 master airway bill 및 master airway bill)의 정보를 입력함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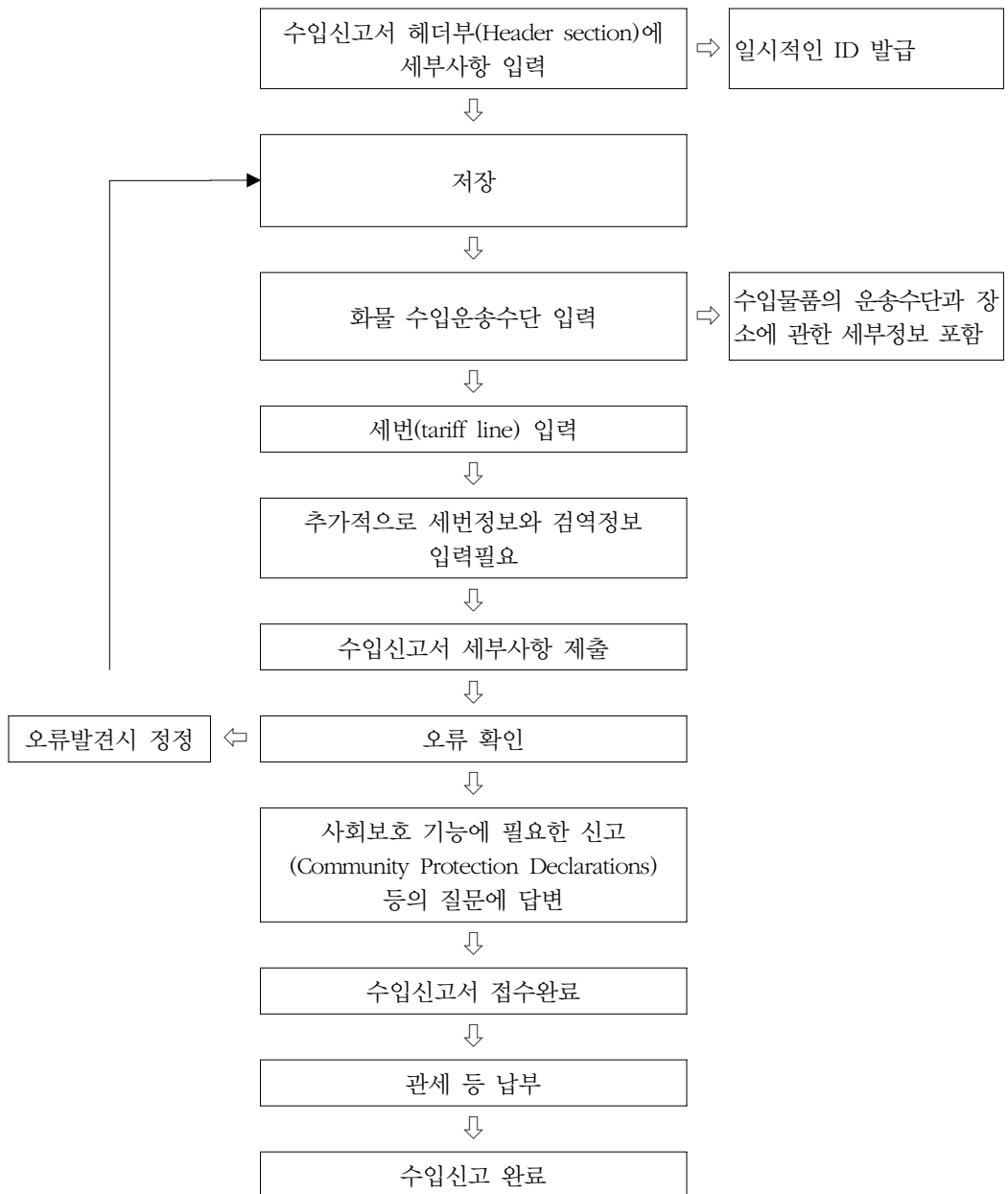
- cargo reporter⁵³⁾가 관세청에 물품의 호주 수입 운송수단(항공, 배 등)을 기입함. 수입자는 Customs Interactive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관세청이 수입자의 신원 증명(Evidence of Identity)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함
- 관세청은 수입자의 EOI 확인 후 Customs Interactive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후 ID를 발급해 줌
- 수입자는 사회보호 기능에 필요한 신고(Community Protection Declarations) 등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전산에 의한 자동 관세납부시스템인 EFT(Electronic Fund Transfer)망을 통하여 관세를 납부함

51) 항공화물전산화(AIR CARGO AUTOMATION)와 해상화물전산화(SEA CARGO AUTOMATION). 호주의 수입화물관리 전산화는 항공화물 전산화(Air Cargo Automation)와 해상화물 전산화(Sea Cargo Automation)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량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의 선적내용에 관한 정보를 세관과 해당 업체가 전자적으로 자료를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52)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5. 12

53) 항공회사, 용선주, 화물운송업자 등

[그림 III -1] 호주의 수입통관 프로세스



자료: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라) 수입신고형태(Declaration Nature Types)⁵⁴⁾

(1) Nature 10

☐ 내수용품(home consumption)

- 내수용품의 수입신고대상 구분코드는 Nature 10 또는 Nature 30(보세구역 반출물품)으로 구분됨
- 세관에 의해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 등의 세금은 납부되어야 하지만, 수입자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의해 GST 납부 연기가 승인된 사람이라면 GST 납부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함

(2) Nature 20

☐ 보세구역 반입물품(warehousing)⁵⁵⁾

- Nature 20 코드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물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Nature 20 코드로 분류된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의해 허가된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야 함

(3) Nature 10/20

☐ 내수용품과 보세구역 반입물품에 동시에 포함되는 단일탁송품(single consignment of goods)

- 이 구분코드는 수입신고시 세관과 AQIS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함

(4) Nature 30

☐ 보세구역 반출물품

54)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55) CUSTOMS ACT 1901 – SECT 71DH

- 보세구역에 보관되었던 물품이 내수용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Nature 30코드로 분류됨
- 세관에 의해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 등의 세금은 납부되어야 하지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 GST 납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ATO)에 의해 GST 납부 연기가 승인될 수 있음⁵⁶⁾

(5) 환적물품

- 환적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재수출되기 때문에 화물정보시스템(ACA 또는 SCA)을 통하여 처리되고 별도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외국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화물을 운송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호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은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단순 이적화물과 선박에서 하역 후 일정기간 계류 후 반출되는 화물이 있음
 - － 전자의 경우는 이적신고만 거쳐 반출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환적물품 수출신고라는 절차를 거쳐 반출됨

마) 수입신고 접수후의 처리

- 모든 수입신고 자료가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다음 중의 하나로 처리됨
 - 즉시 통관될 수 있는 녹색신고(Green line)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서를 받음
 - － Green line으로 분류된 수입신고 물품은 검사 없이 관세 등을 납부하면 통관됨
 - 수입신고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적색신고(Red line)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해당세관에 상품에 대한 생산정보 또는 상업서류 등을 제출함
 - － 적색신고는 보통 품목분류의 오류, 검역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모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임
 - 위장수입물품, 관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Red line), 마약, 검역대상물품 등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Community Protection Check), 관세사 · 수입자가 신고물품이

56)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p. 4

불명확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Amber line)에 대하여 검사대상임을 표시함

바) 관세 등

☐ 관세(customs duty)

○ 관세는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함

☐ 간접세는 관세청이 호주 국세청을 대신해서 징수함

○ 수입물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간접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간접세들은 물품및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 그리고 사치성 자동차세(Luxury Car Tax; LCT) 등이 있음

(1) 물품및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 GST는 농산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등 관세가 면제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적용됨

○ 보세물품은 내수용으로 호주로 반입시 GST를 납부해야 함

○ GST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10%로 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요소의 합으로 산정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납부할 관세
- 호주로의 수입을 위해 지불했거나 지불할 운송비와 보험료
- 와인균등세

(2)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

☐ WET는 다음의 알코올 음료에 적용되며 수입와인에 대한 와인세는 보통 국내 면세가격의 29%임

- 발포포도주(sparkling wine) 및 보강포도주(fortified wine)을 포함한 포도주
- marsala(마르살라산 포도주), vermouth(약초, 향미를 첨가한 백포도주), 와인칵테일
과 크림을 포함한 포도주 생산품
- 기타 알코올을 강화한 과일 및 야채와인 등
- 셰리주(sherry), 벌꿀술(mead) 등

(3) 사치성 자동차세(Luxury Car Tax; LCT)

- ☐ LCT는 모터사이클과 그와 유사한 차량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차량에 적용됨
 - 2톤 이하의 적재물 및 9명 이하의 승객을 운반하도록 생산된 것
 - 사치성자동차에서 응급차나 모터홈, 캠버밴, 상용자동차,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자동차 등은 제외함
 - $LCT = 33\% \times 10/11 \times (LCT \text{ value} - LCT \text{ threshold}^{57})$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1) 신고세관 선택제

-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 도착항에 따라 수입신고 관할권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수입신고에 대한 관할권 제한이 없음

2) 주기적 신고⁵⁸⁾

- ☐ 물품반출 요청(Requests for cargo release)에 따른 주기적 신고제도는 관세사 등 인증된 사람에게 의한 수입정보가 포함된 물품이어야 하며, 내수용(home consumption)물품에 대해서 가능함

57) 2008-09년도 AUD 57,180

58) CUSTOMS ACT 1901-SECT 71DF

- 주기적 신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까지 세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내수용 물품이 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첫째 날
- 주시적 신고제도의 이용을 허가받은 수입업자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 물품을 신고 및 반출함⁵⁹⁾
 - － 첫 번째 단계: 수입업자(또는 관세사 등 대리인)는 RCR(Request for Cargo Release)이라고 알려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여기에는 수입업자와 위탁화물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⁶⁰⁾
 - － 두 번째 단계: 신고서가 접수되면 컴퓨터가 적하목록(Cargo Report)의 제출과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승인을 함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⁶¹⁾

- 호주는 2000년 4월에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에 가입하였으며, 특별부속서 총 25개 장 중에서 18개를 수락함⁶²⁾
 - 특별부속서 장별로 불수락 여부와 수락한 장의 권고관행에 대하여 유보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59) 호주 세관은 주기적 신고제 이외에도 기존의 수입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 밖에 일정 수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와 면세신고제도를 적용함

60) 정재완, 『관세행정발전론(상)』, 한국학술정보(주), 2007, pp. 239~240 요약 발췌

61) WCO 자료

62)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info.dfat.gov.au/Info/Treaties/treaties.nsf/AllDocIDs/77B2FB907FC974EDCA256B20007EE35B>), 2009. 6. 8일자 접속

〈표 III -2〉 호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부속서명(Annex)		장(Chapter)	수락여부(유보조항)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	A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	수락(12조)
		A2. 물품의 일시장치	수락
B	수입	B1. 내수용 통관	수락
		B2. 동일상태 재수입	수락(15조)
		B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수락(7조)
C	수출	C1. 완전수출	수락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D1. 보세창고	수락(7,8,9조)
		D2. 자유지역	불수락
E	운송	E1. 보세운송	수락(7,18조)
		E2. 환적	수락(6조)
		E3. 물품의 연안운송	수락(4,6,9조)
F	가공	F1. 국내가공	수락(17,25조)
		F2. 국외가공	불수락
		F3. 환급	수락(3,6,8,9조)
		F4. 내수용 물품의 가공	불수락
G	일시수입	G1. 일시수입	수락(9,23조)
H	관세법	H1. 관세법	불수락
J	특별절차	J1. 여행자	수락(6,9,14,16조)
		J2. 우편거래	수락
		J3. 상업용 운송수단	수락
		J4. 선(기)용품	수락
		J5. 구호용 탁송품	수락
K	원산지	K1. 원산지 규정	불수락
		K2. 원산지 증명서류	불수락
		K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불수락

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Chapter A1)

□ 개정교토협약의 권고관행 제12조(관세당국에 대한 물품제시):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가 이 목적을 위하여 정해지지 않은 언어, 또는 물품이 반입되는 국가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서류에 기재된 상세사항의 번역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함

- 대부분 정보는 전자방식으로 세관에 제공되며, 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동일상태 재수입(Chapter B2)⁶³⁾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5조(재수입 조건부 수출물품): 동일 물품이 수회에 걸쳐 재수입 조건부로 수출되고 동일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수출시 제출된 재수입 조건부 수출신고가 그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물품의 재수입 및 수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호주 관세법은 각각의 수출입건별로 물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Chapter B3)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적용 분야): 다음 물품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와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국내법령이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면제가 부여되어야 함

- (a)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관 또는 연구소에 탁송되는 경우의 인체추출 치료물질, 혈액형 및 세포유형 시약
- (b)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데만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
- (c)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함께 또는 따로 반입되는 것으로서,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 또는 직업상의 사용을 위한 이사물품으로서 산업용, 상업용 또는 농업용 설비나 장비가 아닌 것
- (d) 고인의 사망시점에 수입국내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고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던 신변용품
- (e) 국내법령이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정한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 선물용품으로서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담배제품을 제외한 것

63) 수출된 물품이 수입관세 및 제세 없이 내수용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로서,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출과 관련하여 주어진 관세 및 제세의 환급, 경감 또는 조건부로 감면된 세액 혹은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이 납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동일상태 재수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자유로이 유통되던 물품(관세상의 제한 없이 처분될 수 있는 물품) 또는 보상제품(국내가공 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선한 결과 생긴 제품)임

- (f) 공인된 구호 또는 자선기구에 증여된 식료품, 의약품, 의류 및 모포류 등으로서 이들 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통제하에 빈민에게 무료로 분배될 물품
- (g) 수입국 거주자에게 수여된 상금으로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함
- (h) 군인묘지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용 자재,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수입되는 관, 유골함 및 장례식용 물품
- (ij)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서류, 양식, 간행물, 보고서 및 기타 물품으로서 국내법령이 규정한 것
- (k)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
- (l)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다만, 수입 수량은 시험에 꼭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 물품은 시험과정에서 완전 소진되거나 또는 그 잔존물이 재수출되거나 세관통제하에 상업적인 가치가 제거되어야 함

○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권고관행 7(k))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4) 보세창고(Chapter D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물품반입) : 수출될 때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추후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환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은 오직 실제로 수출될 때임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8조(물품반입) : 일시수입절차하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추후의 수출 또는 기타 승인받은 처분을 위하여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 절차에 부수되는 의무는 정지 또는 해제됨

○ 일시수입절차는 오직 물품의 재수출 또는 담보집행(enforcement of the security)에 의해 완료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물품반입) : 내국제세의 부과대상이거나 동 제세를 이미 부담한 물품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함

○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수출될 때임

5) 보세운송(Chapter E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출발지 세관관서에서의 절차): 관세당국은 모든 세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관련 탁송품의 상업 또는 운송서류를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로 수락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락은 동 서류에 표시되어야 함

○ 세관의 허락없이 화물은 이동할 수 없으며, 전자방식으로 제공된 적하목록신고⁶⁴⁾ (cargo declaration)의 정보에 기초하여 운송을 수락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8조(세관봉인): 관련 세관관서가 세관봉인(Customs seals) 및 잠금장치(fastenings)를 점검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송서류에 기록하여야 함

○ 운송단위⁶⁵⁾별로 적용한 세관봉인 기록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운송서류가 세관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을 이용해 전자방식으로 기록됨

6) 환적(Chapter E2)⁶⁶⁾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환적 허가): 관세당국은 모든 세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관련 탁송품의 상업 또는 운송서류를 환적을 위한 물품신고서로 수락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락은 동 서류에 표시되어야 함

○ 호주는 일반적으로 환적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전자방식으로 제공된 적하목록신고를 인정하지만 문서로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도 있음⁶⁷⁾

64) 상업용 운송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시 또는 그 전에 제출되는 정보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출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상세사항을 제공함

65) 1. 분리 가능한 본체를 포함한 내부용적이 1세제곱미터 또는 그 이상인 컨테이너 2.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를 포함한 도로차량 3. 철도객차 또는 화물차 4. 거룻배, 바지선 및 기타 선박 5. 항공기

66) 수출입 모두를 취급하는 관서인 한 세관관서의 관할 지역에서 세관통제하에 수입 운송수단에서 수출 운송수단으로 물품이 이전되는 세관절차임

67) 이 경우 세관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게 됨

7) 물품의 연안운송(Chapter E3)⁶⁸⁾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4조(적용분야) :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관세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관세당국은 물품이 연안항해 도중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의하여 물품의 연안운송 절차에 따라 물품이 운송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적용분야) : 물품의 연안운송 절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서 관세영역 밖의 장소에 기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동 물품이 원래 그 절차에 놓인 것이라고 관세당국이 확신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동 물품이 여전히 물품의 연안운송 절차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상황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호주에서는 종종 발생함. 호주의 무관세유통(free circulation)⁶⁹⁾에서 외국을 거친 선박의 물품 운송은 외항운송으로 간주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적재 및 하역) :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세당국은 선박이 미신고된 수입물품이나 다른 세관절차에 놓인 물품을 운송하더라도 적재 또는 하역의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물품의 연안 운송 절차중인 물품의 적재 또는 하역을 허용하여야 함. 이때 부과될 수 있는 경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산비용에 한정되어야 함

○ 호주에서 모든 선박은 반드시 국제화물을 승인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장소에 하역할 수도 있음

68) 자유유통물품 및 관세영역에 도착한 때에 선적되었던 수입선박이 아닌 선박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이, 관세영역 내 어느 장소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동일 관세영역 내의 다른 장소로 운반되어 하역되는 세관절차임

69) 물품운송의 시작과 종료가 발생하고 원산지가 동일한 물품 혹은 물품의 원산지는 다르지만 통관 국가에서 물품운송의 시작과 종료가 발생하는 물품을 의미함

8) 국내가공(Chapter F1)⁷⁰⁾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7조(관세영역내 물품의 체류) : 수입물품과 보상제품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국내가공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다만 당해 제3자가 허가 받은 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규정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5조(국내가공 종료) : 동등물품(equivalent goods)⁷¹⁾을 처리하여 얻어진 제품은 이 장의 목적상 보상제품(compensating products)⁷²⁾으로 간주 됨(동등물품에 의한 상계)

○ 국내가공(inward processing)절차의 부분으로 동등물품의 사용을 수락하지 않음

9) 환급(Chapter F3)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3조(적용 범위) : 국내법령은 수입관세 및 제세를 부담한 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등물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의 환급절차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함

○ 환급절차의 적용은 동등물품과 수입물품의 대체를 수락하지 않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물품의 관세영역 내 체류기간) : 환급 청구가 수락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물품의 수출 이후 12개월 안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70) 어떤 물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선되고 그 후에 수출될 것을 전제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를 조건부로 면제받아 관세영역 내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71) 국내 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사양이 동일한 것으로서 동 수입물품을 대체하는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의미함

72) 국내 가공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선한 결과로 생긴 제품을 의미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8조(환급액 지급) : 국내 법령은 환급액의 지불을 위한 전자 자금이체방법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

○ 호주에서 환급액은 수표로 지급됨.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에 의한 지급 규정은 현행의 전자시스템의 상당한 변경을 요하며 환급청구 수가 적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환급액 지급) : 물품이 세관 보세창고에 장치되거나 또는 물품이 자유지대에 반입되면, 동 물품이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환급액이 지급되어야 함

○ 환급청구는 물품의 실제 수출을 조건으로 지급됨

10) 일시수입(Chapter G1)⁷³⁾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일시수입 허가전 절차) : 관세당국은 추후에 당해 물품이 재수출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하여야 함

○ 가치가 적은 것 또는 카르네(carnet)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일시수입 허용을 위한 물품은 반드시 물품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3조(일시수입 사례) : 권고관행 제2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권고관행 제22조의 물품 중 완전조건부 면제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적어도 일부 조건부로 면제되는 일시수입을 허용하여야 함

○ 호주는 일부 조건부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2조 :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는 일시수입은 1990년 6월 26일 제정된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다음 부속서에 규정된

73) 일시수입(Temporary admission)이란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은 특정목적에 위하여 수입되고 그 사용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이 예정된 것이어야 함

물품에 대하여 허용됨

- (1) 부속서 나.1에 규정된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
- (2) 부속서 나.2에 규정된 “직업용구”
- (3) 부속서 나.3에 규정된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입된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용품, 건품 및 기타 물품”
- (4) 부속서 나.5에 규정된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목적의 수입품”
- (5) 부속서 나.6에 규정된 “여행자의 개인 휴대품 및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6) 부속서 나.7에 규정된 “관광 선전용 물품”
- (7) 부속서 나.8에 규정된 “국경무역으로 수입된 물품”
- (8) 부속서 나.9에 규정된 “인도주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
- (9) 부속서 다에 규정된 “운송수단”
- (10) 부속서 라에 규정된 “동물”

11) 여행자(Chapter J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적용분야) : 복수통로제도⁷⁴⁾는 여행자에 대한 세관통제 및 그들이 휴대한 물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사용(私用)운송수단⁷⁵⁾의 통관에 사용되어야 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적용분야) : 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가 허용되어야 함. 그러나 관세당국은 여행자가 휴대한 물품이 상업적 성격의 수입 또는 수출인 경우, 또는 가격 또는 수량이 국내법령이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입국심사에 따라 확인된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간이통관신고서(single written

74) 복수통로제도(dual-channel system)는 도착 여행자가 두 종류의 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간이세관 통제시스템을 의미함. 녹색표시로 식별되는 하나는 면세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 또는 가격의 것, 그리고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임. 적색표시로 식별되는 다른 하나는 그 외의 여행자를 위한 것임

75) 사용운송수단(means of transport for private use)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승객운송 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물품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용만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는 육상차량 및 트레일러, 선박 및 항공기와 그 예비부품, 통상적인 부속품 및 장비를 의미함

declaration)를 요구하고 있음. 여행자가 입국심사대(immigration desk)를 통과하면 red-green channel 시스템이 운영되지만, 시스템 선택만으로 통관신고로 간주되지 않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4조(적용 분야) :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부과제도가 적용되어야 함. 단 그 수입이 비상업적 성격의 것이고 물품의 추가가격 또는 수량이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여행자가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단일세율 부과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일반적인 여행자 허가(normal passenger concession)에 포함된 물품은 면세가 허용되며,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6조(입국): 여행자가 수입관세와 제세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연초제품, 포도주, 화주 및 향수의 양은 다음보다 적지 않아야 함

- (가) 담배 200개비나 엽권련 50개비 또는 연초 250그램, 또는 이들 물품이 혼합된 경우 총량이 250그램

- (나) 포도주 2리터 또는 화주 1리터

- (다) 화장수 1/4리터 및 향수 50그램

그러나, 연초제품 및 알코올음료에 대한 편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자에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국경을 빈번히 출입하는 자 또는 24시간 미만 국외에 체류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서 허용할 수 있음

- 호주는 알코올 음료(예, 포도주 또는 화주)의 경우 오직 1.125리터를 허용함

- 가입 당시는 알코올 음료 1.125리터를 허용했으나, 현재(2009. 6)는 알코올 음료 면세허용은 1인당 2.25리터(18세 이상)로 상향조정하였음

라. 즉시반출제도

- 모든 수입되는 물품 중 FOB 기준 25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선박 또는 항공

기에 의하여 탁송되는 것, FOB 기준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우편 탁송품은 수입신고 없이 즉시반출이 가능함⁷⁶⁾

3. 일 본

가. 통관제도⁷⁷⁾

1) 수입통관절차

- 외국에서 일본으로 도착한 화물은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 검사와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납부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 관세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화물 수입시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신고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업자인 대행회사에 수입통관을 의뢰할 수도 있음
-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인데, 수입신고서에는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화물의 장치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 이외에도 송품장, 선하증권,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타법령(예 : 식물방역법)에 의한 허가·승인증, 특혜원산지증명서, 감면세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76) CUSTOMS ACT 1901 – SECT 68

77) 관세청, 『일본통관제도 해설』, 2004.

□ 예비심사제를 이용한 신속통관

- 예비심사제는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식품수입 시 수입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검사 여부를 사전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는 신선도가 중요한 화물, 거래처의 납기가 임박한 화물, 크리스마스·정월 상품 등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화물, 타법령의 절차가 필요한 화물, 수입신고되는 화물의 종류가 많아 서류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간이신고제도

- 간이신고제도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화물에 대해 법령 준수 확보를 조건으로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
- 반출신고는 종래대로 수입시마다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실시하고, 납세와 관련된 신고항목은 반출신고 시에 불필요함
 - － 송품장, 보험료 명세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법령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종래와 같이 제출해야 함
 - － 통상 수입신고시 최대 신고항목 수는 123항목(평균 60항목)이지만 간이신고제도에서 최대 반출신고 항목은 60항목(평균 27항목)임
- 납세신고는 1개월 중에 받은 수입의 허가마다 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반출 신고를 실시한 관청 또는 그 관청을 관할하는 세관의 본관에 신고함

나.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사항

1) 신고세관 선택제

-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⁷⁸⁾

78) 관세법 제7조 제1항, 관세법기본통달 7-4

- 이 때 ‘세관장’이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인지 여부는 관세법 및 관세법기본통달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음

2) 주기적 신고⁷⁹⁾

□ 일본은 ‘공인된 수입업자’(Authorized Importers)에 대해 ‘주기적 납세신고’(Periodical Lodgement of Duty/Tax Payment Declaration)를 허용함

- 일본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안전 강화와 무역 원활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한 ‘공인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⁸⁰⁾을 수입업자, 수출업자, 보세창고 운영인, 통관 중개인, 물류업자에게 적용함
- ‘공인된 수입업자’와 ‘공인된 수출업자’에 대해 순응도를 반영하여 세관검사를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
- 또한 ‘공인된 수입업자’에 대해 도착전 수입신고 및 허가, 관세신고 및 납부 전 화물 반출, 주기적 납세신고를 허용

□ ‘공인운영인’의 자격요건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됨

- 적절한 순응기록
 - － 일정 기간 동안 관세법 위반행위가 없는 것과 같이 순응도와 관련된 적절한 통관 및 무역 기록을 의미
- 통관을 위한 e-system(NACCS)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 일본 자동통관시스템(Nippon Automated Customs Clearance System; NACCS)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관련 운영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
 - － 적절한 재무상태 유지를 포함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적절하게 통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79) 일본 관세청, AEO Challenges of Japan Customs, 2008.12

80) 공인운영인 제도는 화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공급망 안전기준에 부합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승인받으면 간소화된 세관절차와 경감된 세관 개입과 같은 혜택을 부여받는 것임

○ 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수립

- 순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을 유지할 능력을 의미
- 안전기준은 순응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 순응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직적 설정

- 순응 프로그램과 각 부서 내에 있는 순응 프로그램 전담조직을 관리하는 중앙부서를 설치하여 각 부서에서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거래상대방 요건

- 안전 분야와 거래당사자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는 구조 설계를 포함하여 순응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정확성을 보장

○ 화물/운송수단/부동산 안전

- 화물의 적절한 관리, 운송경로와 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설계, 화물의 이동을 적절하게 추적하는 것을 포함

○ 도착 예정인 경우의 통관 절차

- 화물명세서 작성과 그러한 명세서의 즉각적인 업데이트

○ 세관과의 협의, 협력, 정보교환

- 순응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잘못을 세관에 보고하는 통로를 설치하는 것

○ 위기관리

- 긴급 상황에 보고할 통로를 확보하고 사후 또는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교육/ 훈련

-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 내부감사

- 순응 프로그램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감사 구조를 설계

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 일본은 2001년 6월에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에 가입하였으며, 특별부속서 총 25개 장 중에서 13개를 수락함

○ 특별부속서 장별로 불수락 여부와 수락한 장의 권고관행에 대하여 유보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Ⅲ-3〉 일본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가입현황

부속서명(Annex)		장(Chapter)	수락여부(유보조항)
A	물품의 관세영역 도착	A1. 물품신고서 제출전 절차	수락
		A2. 물품의 일시장치	수락(3조)
B	수입	B1. 내수용 통관	수락
		B2. 동일상태 재수입	불수락
		B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수락(7조)
C	수출	C1. 완전수출	수락
D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D1. 보세창고	수락(5,7,8,9조)
		D2. 자유지역	불수락
E	운송	E1. 보세운송	수락(17,25조)
		E2. 환적	수락
		E3. 물품의 연안운송	불수락
F	가공	F1. 국내가공	불수락
		F2. 국외가공	불수락
		F3. 환급	불수락
		F4. 내수용 물품의 가공	불수락
G	일시수입	G1. 일시수입	수락(5,9,16,20,21,22,23조)
H	관세법	H1. 관세법	수락(15조)
J	특별절차	J1. 여행자	수락(6,7,15,16,17,26,37조)
		J2. 우편거래	불수락
		J3. 상업용 운송수단	수락
		J4. 선(기)용품	수락(8조)
		J5. 구호용 탁송품	불수락
K	원산지	K1. 원산지 규정	불수락
		K2. 원산지 증명서류	불수락
		K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불수락

1) 물품의 일시장치(Chapter A2)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3조: 일시장치는 수량, 원산지국 또는 적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허용되어야 하지만, 위험물로 구성되어 다른 물품에 영향을 주거나 특별한 설치를 요하는 물품은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반입하기로 지정한 일시장치장에만 반입되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지정된 보세지역에 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정이 그것의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그러함
 - 따라서 일시장치장으로의 반입은 권고관행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로 특정물품에 대해 제한될 수 있음

2)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Chapter B3)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다음 물품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와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국내법령이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면제가 부여되어야 함

- (a)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관 또는 연구소에 탁송되는 경우의 인체추출 치료물질, 혈액형 및 세포유형 시약
- (b)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데만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
- (c)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함께 또는 따로 반입되는 것으로서,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 또는 직업상의 사용을 위한 이사물품으로서 산업용, 상업용 또는 농업용 설비나 장비가 아닌 것
- (d) 고인의 사망시점에 수입국내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고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던 신변용품
- (e) 국내법령이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정한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 선물용품으로서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담배제품을 제외한 것
- (f) 공인된 구호 또는 자선기구에 증여된 식료품, 의약품, 의류 및 모포류 등으로서 이들 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통제하에 빈민에게 무료로 분배될 물품
- (g) 수입국 거주자에게 수여된 상금으로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함
- (h) 군인묘지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용 자재,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수입되는 관, 유골함 및 장례식용 물품
(j)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서류, 양식, 간행물, 보고서 및 기타 물품으로서 국내법령이 규정한 것
(k)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
(l)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다만, 수입 수량은 시험에 꼭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 물품은 시험과정에서 완전 소진되거나 또는 그 잔존물이 재수출되거나 세관통제 하에 상업적인 가치가 제거되어야 함

- 일본 법령은 (d)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제세를 면제하지 않음
- 또한 (a)에서 (l)까지 언급된 물품에 대한 경제적 금지나 제한을 면제하는 조항도 없음

3) 보세창고(Chapter D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5조 : 공공보세창고의 장치는 수량, 원산지국, 적출국 또는 목적지국에 상관없이 수입관세 및 제세의 부과대상인 모든 수입물품 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금지 또는 제한된 모든 수입물품에 허용되어야 하며, 위험물로 구성되어 다른 물품에 영향을 주거나 특별한 설치를 요하는 물품은 이를 반입하기로 특별히 지정한 보세창고에만 반입되어야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중도덕 · 질서, 공공안전, 공중위생 · 보건, 동물 또는 식물검역상의 필요 ②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보호 |
|--|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3개월 이상 보세장치장(Hozei Warehouse)과 통합 보세장치장(Integrated Hozei Warehouse)에 저장된 경우에 관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 또한 관세법 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도 승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 또는 승인은 관세당국의 외국물품 승인 이전에 필요함
- 따라서 보세창고로의 장치는 권고관행에서 열거한 이유 이외에도 제한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수출될 때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

에 대하여는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추후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환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본 법령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 재수출되는 조건으로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으려면 그러한 물품이 수출허가가 난 후 실제로 수출을 위해 선적될 것을 요구함
- 따라서 물품이 단지 보세창고에 반입된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환급이 허용되지 않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8조 : 일시수입절차하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추후의 수출 또는 기타 승인받은 처분을 위하여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 절차에 부수되는 의무는 정지 또는 해제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물품이 단지 보세창고에 반입된 사정만으로는 일시수입절차에 따라 물품에 부과된 의무가 정지되거나 해제되지 않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 내국제세의 부과대상이거나 동 제세를 이미 부담한 물품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되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수출용 물품에 대한 제세는 수출될 물품이 물리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가 아니라 물품을 수출하기로 허가받고 관세당국이 수출용 물품의 실제 선적을 확인한 후에 면제되어야 함
- 따라서 물품이 단지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 사정만으로 제세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

4) 보세운송(Chapter E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7조 : 외국 관세당국이 부착한 세관봉인과 확인식별 표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보세운송활동 목적으로 수락되어야 하고, 외국의 세관봉인 및 잠금장치가 관세영역에서 수락된 경우 국내 봉인 및 잠금장치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 함

- ① 세관봉인과 확인식별 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세관봉인과 확인식별 표시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 ③ 관세당국이 물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외국 관세당국이 부착한 세관봉인은 일본 관세당국이 부착한 봉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5조 : 관세당국이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여행 일정이나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도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나 제세의 징수를 수반하면 안 됨

○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운송된 물품이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관세당국은 물품의 수입시점에 징수유예한 관세를 즉시 징수함

5) 일시수입(Chapter G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5조 : 일시수입은 원산지국, 적출국, 목적지국과 무관하게 허용되어야 함

○ 국제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수입에 관하여 일본 법령은 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제세 경감을 허용하지 않음

○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 그러한 협정에 대해 유보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및 제세 경감이 허용될 수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9조 : 관세당국은 추후에 당해 물품이 재수출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하여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일시수입절차에 따른 물품 수입에도 필수적임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6조 : 관세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일시수입 이익의 이전을 승인하여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원래 수입자로부터 타인으로 일시수입 이익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법령에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관세와 제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원래 수입자에게 귀속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0조 : 일시수입 당시에 유효했던 금지와 제한이 일시수입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 폐지된 경우 관세당국은 내수용 통관에 의한 만료 요청을 수락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물품과 관련된 금지와 제한에 대하여 일시수입과 내수용 통관 사이에 차별이 없음
 - 따라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은 일시수입중인 상태이더라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1조 : 일시수입 물품에 대한 현금담보를 당초 수입세관이 아닌 다른 수출세관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담보 받은 수입세관만이 환급할 자격이 있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2조 :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는 일시수입은 1990년 6월 26일 제정된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다음 부속서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허용됨

- (1)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부속서 B.1.)
- (2) 직업용구(부속서 B.2.)
- (3)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입된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용품, 건품 및 기타 물품(부속서 B.3.)
- (4)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목적의 수입품(부속서 B.5.)
- (5) 여행자의 개인 휴대품 및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부속서 B.6.)
- (6) 관광 선전용 물품(부속서 B.7.)
- (7) 국경무역으로 수입된 물품(부속서 B.8.)
- (8) 인도주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부속서 B.9.)
- (9) 운송수단(부속서 C.)
- (10) 동물(부속서 D.)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일시 수입에 근거한 관세 및 제세의 면제는 위의 (7) 국경무역으로 수입된 물품에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일본은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일시 수입에 근거한 관세 및 제세의 면제가 위의 (1)~(6), (8)~(10)에 언급된 모든 물품에 필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3조 : 권고관행 22에 속하지 않은 물품과 권고관행 22의 물품 중 완전조건부 면제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관세 및 제세가 적어도 일부 조건부로 면제되는 일시수입을 허용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이스탄불 협약에서 언급된 ‘동물’과 같이 관세와 제세가 일부 조건부로 면제되지 않는 물품이 있음

6) 관세범(Chapter H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5조 : 관세당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범죄에 사용된 운송수단에 대한 압류나 유치를 해제해야 함

- ① 운송수단이 물품은닉의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되지 않고
- ② 운송수단이 추후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없으며
- ③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담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

- 일본 법령에 의하면 관세범죄에 사용되어 압류나 유치된 운송수단은 권고관행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압류나 유치가 해제되지 않고 몰수될 수 있음

7) 여행자(Chapter J1)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6조 : 복수통로제도는 여행자에 대한 세관통제 및 그들이 휴대한 물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인용(私用) 운송수단의 통관에 사용되어야 함
 - 일본은 개정교토협약에서 언급된 복수통로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법령에 따라 여행자들이 녹색통로를 선택하더라도 구두 신고가 필요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7조 : 사용된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여행자 또는 소지품에 대한 개별 목록이 세관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여행자 개별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5조 :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세 및 제세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또는 은행카드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관세나 제세의 납부수단으로서 신용카드나 은행카드가 허용되지 않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6조 : 여행자가 수입관세와 제세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연초제품, 포도주, 화주 및 향수의 양은 다음보다 적지 않아야 함
- (a) 담배 200개비나 엽권련 50개비 또는 연초 250그램, 또는 이들 물품이 혼합된 경우 총량이 250그램
 - (b) 포도주 2리터 또는 화주 1리터
 - (c) 화장수 1/4리터 및 향수 50그램
- 그러나, 연초제품 및 알코올음료에 대한 편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자에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국경을 빈번히 출입하는 자 또는 24시간 미만 국외에 체류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서 허용할 수 있음
- 일본 법령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승무원이 관세와 제세를 면제받아 수입하는 화장수나 향수의 수량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17조 : 규정한 수량제한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 및 제세를 면제받아 수입이 허용된 소비품 이외에도 여행자는 총액 75 특별인출권⁸¹⁾(Special Drawing Rights)을 한도로 엄격하게 비상업적인 성격의 물품을 수입관세 및 제세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 연령에 미달한 자 또는 국경을 빈번히

81) 국제통화기금(IMF)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며, 1SDR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통화를 가중평균해 산정하며 현재 약 1.5달러 수준임

출입하는 자나 24시간 미만 국외에 체류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일본 법령에서 수입물품의 총금액이 10,000엔을 초과하면, 여행자가 일본에 반입시킨 물품은 비상업적인 성격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와 제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26조: 관세당국은 비거주자에 의한 개인용 운송수단의 일시 수입에 대해 세관서류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세관서류는 항상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담보도 요구됨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37조: 담보가 현금예치의 형태로 제공된 경우 물품이 재수출되는 관서를 통해 수입되지 않았을지라도 수출관서에서 환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담보를 받은 수입세관만이 환급할 자격이 있음

8) 선(기)용품(Chapter J4)

□ 개정교토협약 권고관행 제8조: 관세영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의 수량은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선용품에 관한 신고서에 기록되어야 함

- 일본 법령에 의하면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의 수량은 선용품에 관한 신고서가 아닌 별도의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함

라. 즉시반출제도

□ 일본의 경우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도로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를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납세심사·검사가 생략되고 반출 후 납세신고를 요하는 ‘간이신고제도’와 수입신고 후 납세와 수입허가 없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수입허가전 화물인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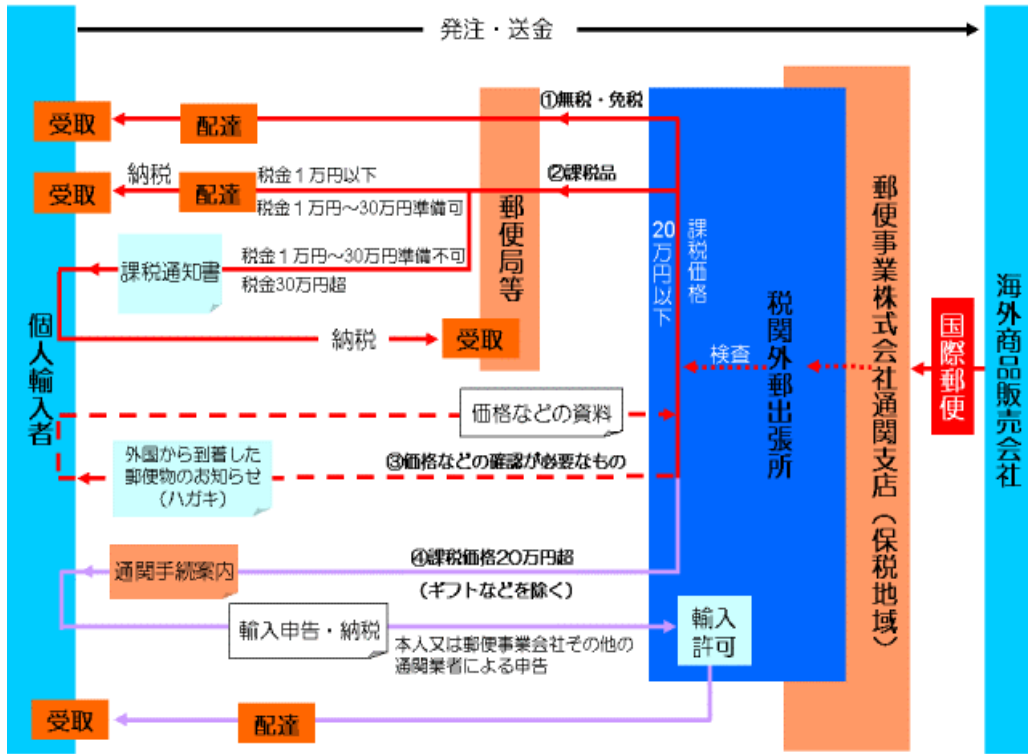
는 엄밀한 의미에서 즉시반출은 아니지만, 화물인수시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가 간
이화된 점에서 즉시반출과 유사한 제도임

□ 국제우편물 중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중 서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세관검사의 대상이 됨⁸²⁾

-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중에서 무세·면세품인 우편물은 우편사업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우편물을 배달함
-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중에서 관세 등 세금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또는 1만엔 이상 30만엔 이하로서 수신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사업주식회사를 경유하여 국제우편물과세통지서 및 납부서와 함께 우편물이 직접 배달됨
 - － 이 때 세금납부를 우편사업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취지를 신청하고 세금상당액과 수수료를 지급하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
 - － 만일 세금상당액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우편물과세통지서만 송달되며, 이를 가지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
-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중에서 관세 등 세금 합계액이 3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통지서만 송달되므로, 과세통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
- 한편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상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정식통관 절차를 거침
 - － 단, 선물 등 기증물품이나 일방적으로 배송되어 가격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인 경우의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82)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세관 수속 FAQ “6101 국제 우편물의 통관 절차의 개요”

[그림 Ⅲ -2] 일본의 국제 우편물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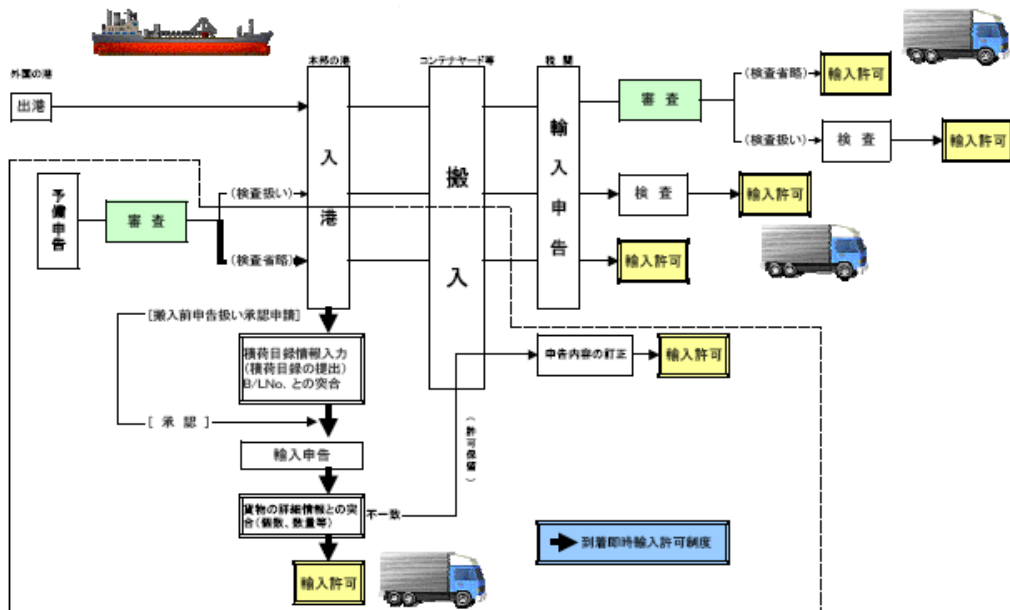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tsukan/kojin.htm>)

- 신속한 국내 반입을 요하는 소액 화물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은 통관의 신속화를 위해 항공화물에 대해 1996년, 해상화물은 2003년에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를 도입함⁸³⁾
 - 이는 Air-NACCS(항공화물에 적용) 또는 Sea-NACCS(해상화물에 적용)를 사용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화물 중에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화물에 대해 화물의 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수입허가를 하는 제도임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여 적하목록정보가 등록된 시점에 수입신고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면서 즉시 수입허가가 나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음
 - 단, 수입신고의 내용과 적하목록정보는 일치할 필요가 있음

83) 관세법 제67조의 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1항 제3호

[그림 III -3] 해상화물에 대한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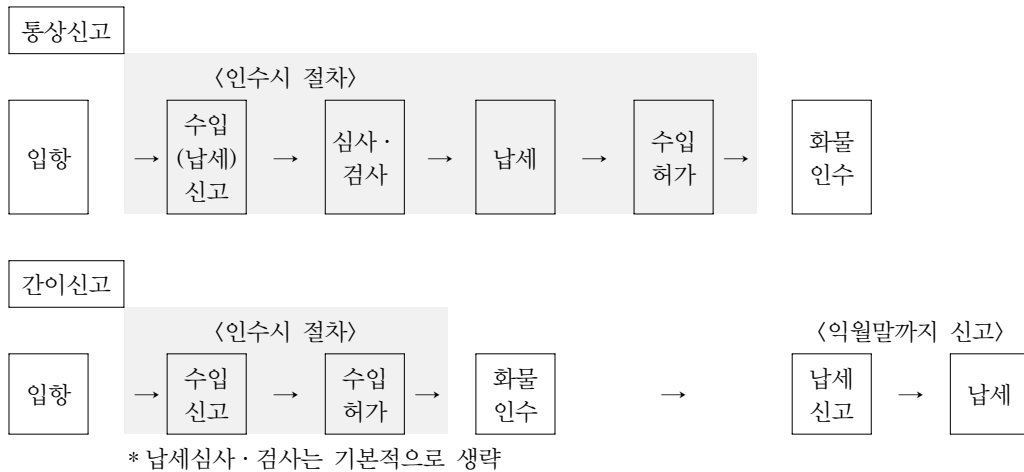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부 홈페이지(www.mof.go.jp/singikai/kanzegaita/tosin/kana141213/gai9.pdf)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정받은 화물에 대해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의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간이신고제도’를 2001년 3월부터 도입⁸⁴⁾

84) 관세법 제7조의 2

[그림 Ⅲ-4] 통상신고와 간이신고제도의 비교



□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화물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수입허가전 화물인수제도’를 실시⁸⁵⁾

○ 이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 등 상당액을 세관에 담보로 제출한 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귀중품, 위험물, 변질·손상의 우려가 있어 특히 긴급한 인수를 요하는 것
- 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것으로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 특혜세율 또는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세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단, 원산지 증명서 제출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양륙 후 수량을 확정하는 계약에 의한 화물이어서 수입신고시 화물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 수입화물이 수입금지 품목이거나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가 허위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전 화물인수를 승인받을 수 없음

85) 관세법 제73조

4. 국제비교

〈표 III-4〉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국제비교

장 (Chapter)	교토협약 권고조항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일 본
A1. 물품신고 제출전 절차	7	- 필요한 경우에 입 항서류 제출	- 항상 여객명부·적 하목록 제출	O	O	O
	11	- 물품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세관에 수입 신고서를 접수	- 한약재 등 일부 품 목의 경우 물품확 인서류 접수세관과 수입신고서 접수세 관 사이	O	O	O
B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7	- 면세항목 열거	(면세되지 않는 항목) - 상금	(면세되지 않는 항 목) - 고인의 신변용품 - 자선기구에 대한 가증물품 - 상금	(면세되지 않는 항 목) -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물품	(면세되지 않는 항목) - 고인의 신변용품
D1. 보세창고	7	- 수출시 관세환급대 상 물품이 보세창 고에 반입될 때 관 세환급	- 수출시 관세환급	- 수출시 관세환급	- 수출시 관세환급	- 수출시 관세환급
	8	- 일시반입중인 물품 이 보세창고 반입 시 재수출 의무, 담보제공 등 면제	- 면제안됨	- 면제안됨	- 면제안됨	- 면제안됨
	9	- 수출시 내국세환급 대상 물품이 보세 창고에 반입될 때 내국세 환급	- 수출시 내국세 환급	- 수출시 내국세 환급	- 수출시 내국세 환급	- 수출시 내국세 환급
D2. 자유지역	9	- 사전정보화보시 반 입물품에 대한 물 품신고 요구하지 않음	- 물품신고 요구	- 물품신고 요구	X	X
F3. 환급	5	- 환급대상물품의 수 출기간 연장 허용	- 수출기간 연장 불 허	- 수출기간 연장 불 허	O	X
	6	- 상업상 기타 이유 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기간 연장 허 용	- 환급신청기간 연장 불허	- 환급신청기간 연장 불허 (단, 관세당국이 기 한도와 신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연 장허용)	- 환급신청기간 연장 불허	X

〈표 Ⅲ-4〉의 계속

장 (Chapter)	교토협약 권고조항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일 본
F3. 환급	9 - 보세창고 장치 또는 자유지역 반입 시 수출조건으로 환급	-수출시 환급	-수출시 환급	-수출시 환급	X
G1. 일시수입	9 - 재수출 의심없는 경우 신고없이 일시반입	-수입신고 필요	O	-수입신고 필요	-수입신고 필요
	19 - 일시반입물품을 다른 세관절차(예보 세구역 반입)로 이관한 경우 일시반입 중지 또는 종료	-오직 수출시에만 일시반입 종료	O	O	O
	21 -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현금담보를 수입세관이 아닌 다른 수출세관에서 환급 허용	-담보받은 수입세관만 환급	O	O	-담보받은 수입세관만 환급
	22 - 이스탄불 협약상 특정물품의 일시수입 관세 등 전액면제	(면세되지 않는 항목) -스포츠 용품 -관광선전용 물품 -동물 -견본	(면세되지 않는 항목) - 국경무역으로서 수입된 물품	O	- 국경무역으로서 수입된 물품은 관세 등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 -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등의 면제가 필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일본 이스탄불 협약 미가입)
	23 - 일시조건부 면세 허용	- 일시조건부 면세불허	- 일시조건부 면세불허	- 일시조건부 면세불허	- 동물의 일시수입은 일시조건부 면세불허
J5. 구호용 탁송품	6 - 모든 구호용 탁송품 관세 면세	-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과세	O	O	X

주: O - 유보없이 수락

X - 불수락

IV. 결 론

- 세계관세기구(WCO)는 1999년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교토협약』을 채택하여 국가간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표준화를 주요 쟁점화하였음
- 2006년 2월 발효된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임
 - 개정교토협약은 가입국이 필수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일반부속서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부속서로 협약을 분리함
 - － 특별부속서에 대해서도 일단 수락한 이후에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유보를 허용하여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세계적인 통일과 간소화를 도모함
 - 국제무역과 기타 국제적 교류를 저해하는 체약당사국들의 세관절차와 관행의 상이점을 제거하고, 세관절차와 관행의 원활화,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세관통제의 적절한 표준화를 보장함
-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국제표준화, 관세의 감면, 최혜국 대우, 정보기술의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세부사항으로는 세관이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 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도입, 일시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관절차의 적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 등이 있음
- 200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총회 결의로 채택된 21세기 관세의 역할과 비전(Customs in the 21st Century)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 관세·무역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공급망의

안전 확보 및 무역원활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함

- e-Customs를 통한 전세계적 세관망 구축, 국경관리 협조체제 개선, 정보활동에 기반한 위험 관리 등을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함

□ 2009년 3월 19일~20일 동안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6차 개정교토협약 관리위원회에서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에 의한 제안 등을 논의함

- 뉴질랜드는 SAFE Framework(교역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기준), WTO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s) 협상, 공동 국경관리(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및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에 관한 현안을 제안하였고, 네덜란드는 진화된 화물정보 필요성, 통관단일창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⁸⁶⁾, 통관관련 자료의 조화와 표준화 작업 등에 관한 안건을 제안함

□ 우리나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수락여부 현황을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부속서 25개 장(Chapter)에서 14개 수락으로 비교적 많은 장의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을 수락하고 있음

- 2009년 7월 기준으로 개정교토협약 가입국은 63개국으로 이 중에서 특별부속서의 모든 장을 수락한 국가는 이집트, 우간다, 짐바브웨에 불과함
 - 이외에 미국 18개, 일본 13개, 뉴질랜드 18개, 노르웨이 22개, 호주 18개를 수락했으며 영국, 스위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은 모두 불수락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특별부속서를 수락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동일상태 재수입, 보세운송, 물품의 연안운송, 국내외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관세범 등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교토협약의 최신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세행정에 반영시키고, 지역회원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86)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임.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함

□ 관세행정 국제표준 및 관세행정 선진 기술의 신속한 도입 등으로 다변화 속의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은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의 구축으로 마련할 수 있음

－ 외국 선진 통관체제의 개편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동화 시스템의 구비 또한 필요할 것임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출증대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국제적 관세행정 표준화를 수립해야 함

□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제도의 개선 및 세관행정에도 21세기 관세의 역할과 비전 (Customs in the 21st Century)의 전략적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세관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무역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관세청, 『일본통관제도 해설』, 2004.

송선욱, 「WCO의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계간 관세사』 200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04.

신유균, 「발전적 관세행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활동과 한국관세행정의 전개방향(상)」, 『관세』 제348호, 한국관세연구소, 1999.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 무역』 제38권 제1호 통권 제423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6.

정재완, 『관세행정발전론(상, 하)』, 한국학술정보, 2007.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bp.gov>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

일본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go.jp>

세계관세기구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au>

〈부표 1〉 개정교토협약 가입국의 특별부속서·장별 수락여부 현황

가입국	수락한 장의 합계	특별부속서/장																										
		A		B		C		D		E			F				G		H		J					K		
		1 장	2 장	1 장	2 장	3 장	1 장	1 장	2 장	1 장	2 장	3 장	1 장	2 장	3 장	4 장	1 장	1 장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1 장	2 장	3 장		
알제리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주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제르바이잔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츠와나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가리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캐나다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2	-	-	-	-	-	-	×	-	-	-	-	-	-	-	-	×	-	-	-	-	-	-	-	-	-	-	
크로아티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프로스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코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덴마크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집트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럽연합	0	-	-	-	-	-	-	-	-	-	-	-	-	-	-	-	-	-	-	-	-	-	-	-	-	-	-	
핀란드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일	0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스	0	-	-	-	-	-	-	-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르단	7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트비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레소토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투아니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0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다가스카르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국	수락한 장의 합계	특별부속서/장																									
		A		B		C	D		E			F				G	H	J					K				
		1 장	2 장	1 장	2 장	3 장	1 장	1 장	2 장	1 장	2 장	3 장	1 장	2 장	3 장	4 장	1 장	1 장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1 장	2 장	3 장	
말레이시아	2	-	-	+	-	-	-	-	-	-	-	-	-	-	-	-	-	-	-	+	-	-	-	-	-	-	
몽골	0	-	-	-	-	-	-	-	-	-	-	-	-	-	-	-	-	-	-	-	-	-	-	-	-	-	
몬테네그로	0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로코	0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미비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0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키스탄	4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란드	0	-	-	-	-	-	-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0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네갈	0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르비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0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0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웨덴	0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0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키	0	-	-	-	-	-	-	-	-	-	-	-	-	-	-	-	-	-	-	-	-	-	-	-	-	-	
우간다	25	+	+	+	+	+	+	+	+	+	+	+	+	+	+	+	+	+	+	+	+	+	+	+	+	+	
영국	0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18	×	×	+	×	×	+	×	×	×	×	+	×	×	×	-	×	-	-	-	+	×	+	-	-	-	
베트남	0	-	-	-	-	-	-	-	-	-	-	-	-	-	-	-	-	-	-	-	-	-	-	-	-	-	
잠비아	0	-	-	-	-	-	-	-	-	-	-	-	-	-	-	-	-	-	-	-	-	-	-	-	-	-	
짐바브웨	25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보없는 수락		9	9	13	5	7	13	6	4	6	8	7	6	6	3	5	5	8	7	10	11	9	9	6	6	6	
유보있는 수락		4	3	1	3	5	0	5	3	4	3	1	3	1	5	0	8	1	3	0	0	2	1	0	0	0	
합계		13	12	14	8	12	13	11	7	10	11	8	9	7	8	5	13	9	10	10	11	11	10	6	6	6	

주: 1. + 유보없는 수락, × 유보있는 수락

2. 2009년 7월 현재 가입국은 63개국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58개 국가의 현황만 표기

자료: WCO, Position as regard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as amended), June 2008.

〈부표 2〉 특별부속서 수락여부(유보조항) 비교

부속서 (Annex)	장(Chapter)	우리나라	미국	호주	일본
A	1. 물품신고 제출전 절차	수락(7,11조)	수락(12조)	수락(12조)	수락
	2. 물품의 일시장치	수락	수락(11조)	수락	수락(3조)
B	1. 내수용 통관	수락	수락	수락	수락
	2. 동일상태 재수입	불수락	수락(15조)	수락(15조)	불수락
	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	수락(7조)	수락(7조)	수락(7조)	수락(7조)
C	1. 완전수출	수락	수락	수락	수락
D	1. 보세창고	수락 (7,8,9조)	수락(7,8,9조)	수락(7,8,9조)	수락(5,7,8,9조)
	2. 자유지역	수락(9조)	수락 (9,18조)	불수락	불수락
E	1. 보세운송	불수락	수락(7조)	수락(7,18조)	수락(17,25조)
	2. 환적	수락	수락(6조)	수락(6조)	수락
	3. 물품의 연안운송	불수락	수락	수락(4,6,9조)	불수락
F	1. 국내가공	불수락	수락 (7,23,25,26조)	수락(17,25조)	불수락
	2. 국외가공	불수락	수락 (16,17,18조)	불수락	불수락
	3. 환급	수락 (5,6,9조)	수락 (5,6,9,10조)	수락(3,6,8,9조)	불수락
	4. 내수용 물품의 가공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G	1. 일시수입	수락 (9,19,21,22,23조)	수락 (16,22,23조)	수락 (9,23조)	수락 (5,9,16,20,21,22,23조)
H	1. 관세범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수락(15조)
J	1. 여행자	불수락	불수락	수락 (6,9,14,16조)	수락 (6,7,15,16,17,26,37조)
	2. 우편거래	수락	불수락	수락	불수락
	3. 상업용 운송수단	수락	수락	수락	수락
	4. 선(기)용품	수락	수락(4조)	수락	수락(8조)
	5. 구호용 타송품	수락(6조)	수락	수락	불수락
K	1. 원산지 규정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2. 원산지 증명서류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불수락

자료: WCO 홈페이지, Contracting parties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and their instruments, 2009
 년 8월 기준(http://www.wcoomd.org/home_wco_topics_pfoverviewboxes_tools_and_instruments_pfconventions_instruments.htm)

세법연구 09-03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2009년 8월 24일 인쇄

2009년 8월 27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58-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